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매뉴얼

2019년 증보판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매뉴얼

2019년 증보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청렴상담신고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강요 또는 제의받은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렴상담신고센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 우편신고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울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감사실
- 전화상담 : TEL : 054) 459-7079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 현장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아래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조리신고센터
- 우 편 신 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찰팀
- 전 화 상 담 : TEL : 044-201-3123 FAX : 044-201-5506



■ 목 차 ■

I. 불법자동차에 대한 이해 / 1

II. 자동차안전단속원 제도 / 5

III. 자동차 튜닝 / 6

IV. 위반행위별 벌칙/ 16

V. 불법튜닝자동차 단속사례 / 17

VI.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단속사례 / 43

VII. 등록번호판 위반 사례 / 52

VIII. 전산(VIMS)사용방법 / 56

IX. 참고자료

1. 길이·너비 등에 대한 특례기준 63
2.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참고자료 64
3. 자동차의 제원측정 방법 67
4. 주간주행등 설치 기준 71
5. 과태료의 부과 기준 72

부 록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81

I. 불법자동차에 대한 이해

<< 불법자동차란? >>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위반, 불법명의 자동차, 무단해체 금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함

□ 불법튜닝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자는 튜닝승인을 받고 변경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구조·장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닝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 ① 법 제34조에서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조·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제외한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차축에 한한다)·제4호·제5·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제12호 내지 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구 조(2개 항목)	장 치(13개 항목)
1. 길이,너비 및 높이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최저지상고	2. 주행장치(차축에 안함)
3. 총중량	3. 조종장치
4. 중량분포	4. 조향장치
5. 최대안전경사각도	5. 제동장치
6. 최소회전반경	6. 완충장치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7.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8. 차체 및 차체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항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기타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17. 후사경, 창담이기 기타 시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 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 (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 ① 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길이·너비·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
- ② 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19호부터 제20호

□ 안전기준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위반
 -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영 제8조)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2항제13호,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별기준 러목)

** (이륜차)「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3항제19호,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별기준 소목

□ 등록번호판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떼지 못한다.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1호

-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1의2호
-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자동차관리법」 제84조(벌칙) 제3항 및 제18의2호(이륜차)

-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자동차관리법」 제84조(벌칙) 제2항 제1호,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별기준 라목, 마목)
- **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제84조(벌칙) 제3항 제18호의3 및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별기준 보목)

-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벌칙 및 과태료)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이를 운행한 자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1의2, 제84조(벌칙) 제2항제2호 (시행령 별표2 개별기준 사목)
- **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제84조(벌칙) 제3항제18호, 4항제2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별기준 모목)

※ 「자동차관리법」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 누구든지 차대표기 및 원동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제78조(벌칙) 제2호

□ 불법명의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위반

-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제81조(벌칙) 제7의2호

□ 무단해체·조작 금지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자동차의 무단해체·조작 금지) 위반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제4호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79조(벌칙) 제5의2호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

II. 자동차안전단속원 제도

□ 자동차안전단속원 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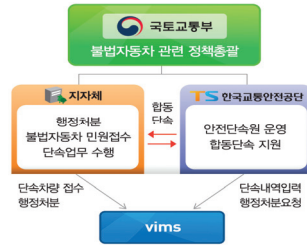
-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조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 제도 시행(2018.6.27)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안전단속원 운영체계〉

- ▷ 국토교통부: 불법자동차 관련 정책총괄
- ▷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 운영
- ▷ 지자체(시, 군, 구): 행정처분
- ▷ 전산 시스템 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
※ VIMS(자동차검사관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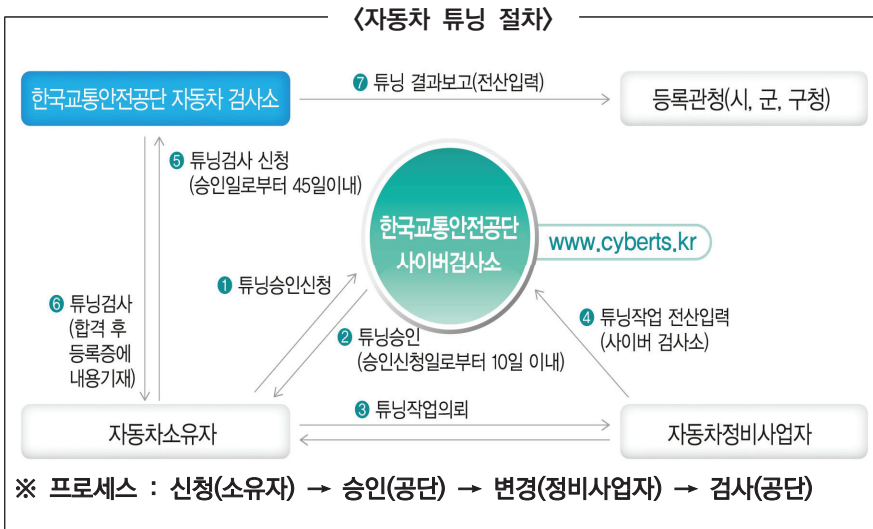
○ 단속차량의 행정처분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4. 생략

Ⅲ. 자동차 튜닝

-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자동차의 안전성 등의 적합여부를 사전에 승인을 받아 튜닝 작업을 진행하여 튜닝검사에 합격한 후 운행토록 하는 제도



□ 튜닝 승인신청 및 검사신청 시 구비서류

승인신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검사신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튜닝승인신청서 -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제원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 (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검사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튜닝승인서 -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제원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 (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 이륜자동차의 튜닝절차



□ 튜닝 유형

○ 빌드업 튜닝(Build Up Tuning)

- 자동차를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특수한 적재함이나 차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원래대로 원상복구하는 튜닝



○ 튠업 튠닝(Tune Up Tuning)

-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조향·제동·연료·차체 및 차대·연결 및 견인·승차·소음방지·배출가스발산방지·등화·완충장치 등의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튠닝

	
<p>터보인터쿨러</p>	<p>튜닝소음기</p>
	
<p>주간주행등</p>	<p>동력인출장치(PTO)</p>

○ 드레스업 튠닝(Dress Up Tuning)

- 주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기 위하여 외관을 변경·색칠하거나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튠닝

	
<p>색상변경</p>	<p>에어댐</p>
	
<p>범퍼</p>	<p>몰딩</p>

□ 경미한 튜닝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1)

구분	구조·장치 등
길이·너비 및 높이	· 포장탑, 화물자동차 바랍막이, 적재함 전면 지지대 (차체높이300mm 까지), 포장보관대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시동리모콘, 흡기 및 배기다기관, 에어크리너, 스노클 등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부품교환 등 변경 다만, 원동기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의 변경. 다만, 변속기 종류(수동↔자동)의 변경은 제외
소음방지장치	· 배기관 텃(소음기의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조향장치	· 직경이 동일한 핸들, 핸들손잡이, 레버손잡이 등 조향장치의 변경
제동장치	· 브레이크 자동잠금 및 해제장치, 정속주행 장치, ABS보조장치 및 캘리퍼 실린더 변경(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에 한함) · 보조브레이크 페달,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 연료절감장치의 장착
차체 및 차대	· 범퍼, 에어스포일러, 에어댐, 휠더스커트, 후드/윈도우 프렉터, 후드스쿠프, 선바이저, 롤바,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탈부착 하는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범퍼가드, 그릴가드, 휠더커버, 쉐르프, 루프탑바이저, 안테나, 차간거리경보장치, 컨버터블 탑용롤바, 에어컨 등 실내에 설치하는 장치, 맨형 화물자동차 적재장치의 창유리, 유리지지대, 공구함, 러닝보드(보조발판), 루프탑 텐트,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블랙박스작동표시등, 화물탑차 스커트,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에 설치되는 보조유압잭, 농약살포용 분무기 · 기본 차체의 크기 등을 변경하지 않는 차체 및 차대의 수리
연결 및 견인장치	· 단순한 전기식 윈치만 설치
등화장치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의 변경 · LED 번호등
인증부품	· 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다만, 기능이 다른 인증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

* 비고 : 경미한 구조·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2016년 경미한 튜닝 대상 확대 항목

- 로드레스트(적재함 전면 지지대): 300mm 까지 허용



- 루프탑 텐트: 중량제원의 허용차 이내로 허용



- 어닝: 차체 너비제원 이내 허용



※ 어닝에 설치된 등화 허용 조건: 주행 중에 작동할 수 없는 구조로서 정차한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

- LED번호등 허용: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않고, 등광색이 백색인 경우



- 공구함: 일반형 화물차 적재함에 공구함을 설치하는 경우



※ 적재함에 설치하는 공구함은 적재함 길이의1/2이내,높이의 2배이내 설치가능

- 등화장치 경미한 튜닝 확대(인증 받은 등화장치)



※ 전조등을 제외한 등화장치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화장치로 인증하거나 인증 받은(튜닝부품인증 포함) 등화장치를 설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경미한 튜닝으로 완화

□ 2017년 경미한 튜닝 대상 확대 항목

- 차실내부에 설치되는 블랙박스 작동 표시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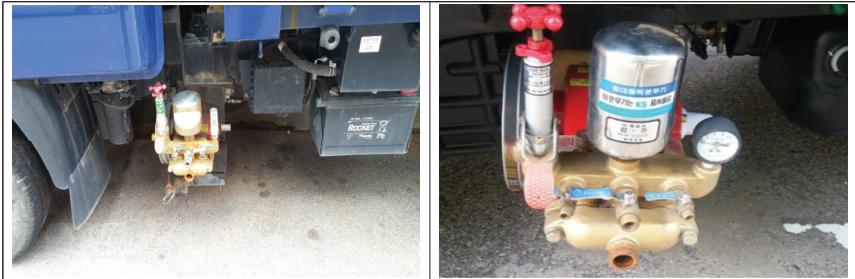


※ 범퍼에 설치된 일명 시큐리티 LED 장치는 안전기준 위반 등화

- 화물탑차 스커트,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보조 유압 잭



- 농사용 농약살포 분무기



※ 자동차의 측면 또는 하단부에 위치하고 동력인출장치(PTO)가 설치된 자동차에 한함. 적재함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튜닝승인 대상

○ 튜닝인증부품 현황('19.3월 기준)

인증부품	비고	인증부품	비고
마그네슘 합금 휠 (핸즈코퍼레이션 MG0401)		브레이크 캘리퍼(HD-04) (주)에이톤	
알루미늄 휠 (핸즈코퍼레이션 PR0004)		브레이크 캘리퍼(NS-50) (주)에이톤	
브레이크 캘리퍼(REBS 6P) 제논본사		브레이크 캘리퍼 (NEOTECH SLIM 4P) 네오테크	
브레이크 캘리퍼 (FELLA) (주)뉴대한		브레이크 캘리퍼 (MYRIA) 데카 주식회사	
브레이크 캘리퍼 (FEX 4) 스톨츠 주식회사		브레이크 캘리퍼 (FEX 6) 스톨츠 주식회사	
브레이크 캘리퍼 (NEOTECH 4P Caliper) 네오테크		튜닝 소음기 (준비엘 JBLV-K20MK7TR) *폭스바겐골프2.0TDI	
튜닝 소음기 (준비엘 JBLHR-K20TMTR) *싼타페 TM		튜닝 소음기 (준비엘 JBLK-10JATR) *기아 올뉴모닝	
튜닝 소음기 (준비엘 JBLK-20SLTR) *스포티지 SL		튜닝 소음기 (준비엘 JBLC-15V400TR) *쉐보레말리부)	

튜닝 소음기 (준비엘) JBLK-16YDTR) *기아 K3		튜닝 소음기 (준비엘) JBLB-20F10TR) *BMW 520d	
튜닝 소음기 (준비엘) JBLB-20F30TR) *BMW 320d		튜닝 소음기 (준비엘) JBLK-10TMATR) *레이 TA	
튜닝 소음기 (준비엘) JBLK-10TMACR) *레이 TA		튜닝 소음기 (준비엘) JBLH-16ADSTR) *아반떼AD 스포츠	
튜닝 소음기 (준비엘) JBLH-16PDTR) *i30 PD		튜닝 소음기 (준비엘) JBLK-20JFNR) *K5 JF	
튜닝 소음기 (준비엘) JBLHR-20TLTR) *투싼 TL		튜닝 소음기 (준비엘) JBLKR-20UMTR) *쓰렌토 UM	
튜닝 소음기 (준비엘) JBLH-16ADTR) *아반떼 AD		튜닝 소음기 (준비엘) JBLKR-20QLTR) *스포티지QL	
튜닝 소음기 (준비엘) JBLH-16MDTR) *아반떼 MD		주간주행등 (오스람 DRL 301)	
주간주행등 (오스람 DRL 401) 2016년7월31단종		주간주행등(ACDelco Aveo Daylight) (코너스톤 테크)	
조명 앰블럼(후면) (보스웰코리아) *코란도C		조명 앰블럼(후면) (보스웰코리아) *코란도C 단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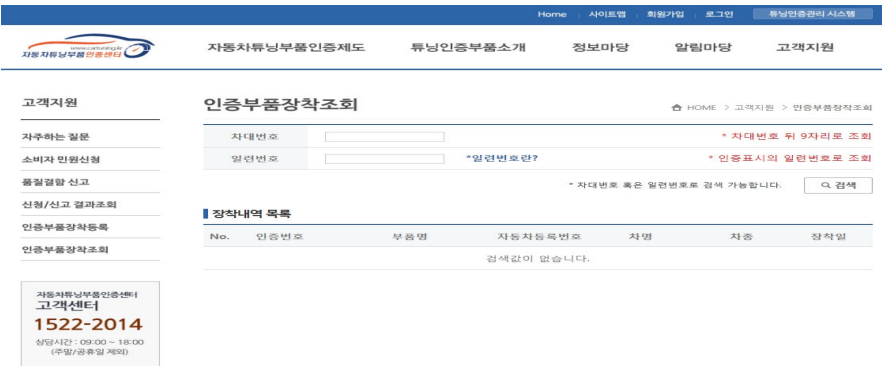


※ 튜닝부품인증 당시 적용대상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에 장착하는 경우 튜닝승인대상이며, 조명앰블렘 역시 적용차량 이외에 설치한 경우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

○ 튜닝인증부품 확인

- 튜닝인증부품 장착여부를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www.cartuning.kr)에서 차대번호 또는 일련번호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함(모바일 포함)

<조회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s search page for tuning parts.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Home, 사이트맵, 회원가입, 로그인, and 튜닝인증관리 시스템. Below this is a header with the logo and navigation links: 자동차튜닝부품인증제도, 튜닝인증부품소개, 정보마당, 알림마당, and 고객센터.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인증부품장착조회' (Certified Part Installation Search). It includes a search form with fields for '차대번호' (Chassis Number) and '일련번호' (Serial Number). There are search buttons and a '검색' (Search) button. Below the search form is a table titled '장착내역 목록' (Installation History List) with columns for No., 인증번호, 부품명,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and 장착일. The table is currently empty, with a message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No search results found). On the left side, there is a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section with links for '자주하는 질문', '소비자 민원신청', '품질결함 신고', '신청/신고 결과조회', '인증부품장착등록', and '인증부품장착조회'. At the bottom left, there is a box for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 고객센터' (Cartuning Center Customer Service) with the phone number 1522-2014 and operating hours: 상담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일련번호 확인>



The image shows a vehicle registration document on the left and a KATMO certification sticker on the right. The registration document is titled '<부품인증 마크 부착 위치>' (Mark Placement for Part Certification) and includes a '자동차등록증' (Vehicle Registration Certificate) section. The certification sticker features the KATMO logo, the text 'KATMO Approved Automobile Tuning Parts Certified', and a QR code. A red arrow points from the QR code to the serial number '가123456' on the sticker. Below the sticker, there is a section titled '장착여부 확인' (Check Installation Status) with the following text: '* 인증 받은 튜닝 부품의 장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check the installation status of certified tuning parts.) and '* 일련번호는 총 7자리 입니다. 정확히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The serial number is a total of 7 digits. Please enter it accurately.)

Ⅳ. 위반행위별 벌칙(요약)

대 상	근 거	벌 칙
무등록자동차	법 제5조(등록)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0조) -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등록번호판	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	○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78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한 경우
	법 제10조(등록번호판) 법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 ※ 법 10조 5항 준용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무단방치자동차	법 제26조(강제처리)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	법 제24조의2(운행정지)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튜닝자동차	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	○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법 제66조) - 자동차정비업자가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튜닝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0조) -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한 자동차제작자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법 제29조, 법 제50조 (구조·장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4조) -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무단해제 (속도제한장치)	법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제·조작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9조) -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 81조) -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무단으로 해제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V. 불법튜닝 자동차 단속 사례

- 「자동차관리법」제34조 위반(형사벌 대상)
 - (별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적용)
- 대상자
 - 법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 초과

- 자동차의 제원을 실측하여 자동차 제작 당시 통보된 제원 또는 튜닝과정(튜닝승인 및 검사)을 통해 변경된 제원과 상이한 경우 단속 대상
-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안전기준 제4조)
 1. 길이 : 13미터(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이내
 2. 너비 : 2.5미터 이내(간접시계장치·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 등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높이 : 4미터 이내
- 이륜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안전기준 제59조)
 1. 길이 : 2.5미터(대형의 경우에는 4미터)이내
 2. 너비 : 2미터 이내
 3. 높이 : 2미터 이내

〈제원측정조건〉

- 공차상태
 - 직진상태에서 수평면에 있는 상태
 - 차체 밖에 부착하는 간접시계장치, 안테나, 밖으로 열리는 창,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환기장치등의 바깥 돌출부분은 이를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
- ※ 제원측정 시 자동차 안전기준 별표33 '제원의 허용차' 초과여부 확인

〈참고자료〉

■ 제원의 허용차(안전기준 별표33)

제원의 허용차(제115조관련)

종별	제원	길이 (mm)	너비 (mm)	높이 (mm)	윤거 (mm)	축거 (mm)	오우버행 (mm)	객실 및 하대 (mm)			차량중량(kg)
								길이	너비	높이	
경형 및 소형 자동차		±40	±30	±50	±30	±30	±30	±30	±30	±30	±60
중형자동차 및 대형자동차		±50	±40	±60	±40	±30	±40	±50	±30	±30	중형자동차 : ±100 대형자동차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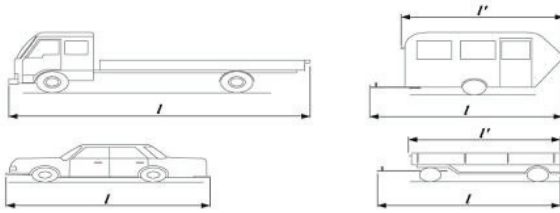
주.

1. 제4조, 제6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 허용차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7의2 제11호의 순번 제3호에 따른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한 승합자동차의 구동축 축중의 경우에는 3% 이하의 범위에서 “+”의 허용차를 인정한다.
2. 자동차 등화장치의 부착위치 허용차는 제원중 길이·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를 준용한다.
3.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제원 및 등화장치의 허용차는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허용차를 적용한다.
4. 초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중량(kg) 허용치를 ±40을 적용한다.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에 따른 길이·너비·높이 및 총중량에 대해서는 이 표에 따른 허용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 자동차 제원측정 방법(안전기준 시행세칙 별표2)

◇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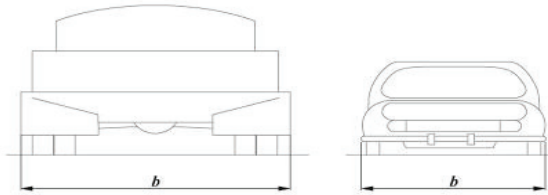
- 자동차의 최전단(세미트레일러인 경우 연결장치의 연결부위 중심)과 최후단을 기준면에 투영시켜 차량 중심선에 평 방향의 최대거리를 측정한다



l : 자동차의 길이
 l' : 견인장치의 길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길이
 [그림 1-1] 자동차의 길이

◇ 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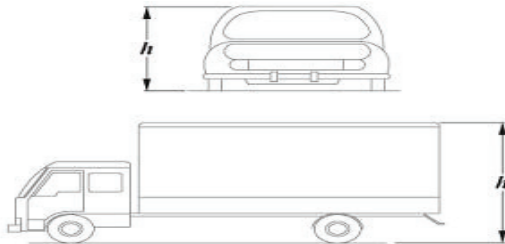
- 자동차의 전면 또는 후면을 투영시켜 차량중심선에 직각인 방향의 최대거리를 측정한다. 다만, 측면보조방향지시등 및 옆면표시등은 측정시 제외한다.



b : 자동차의 너비
 [그림 1-2] 자동차의 너비

◇ 높이

- 자동차의 전면,후면 또는 측면을 투영시켜 차량중심선에 수직인 방향의 최대거리를 측정한다.



h : 자동차의 높이
 [그림 1-3] 자동차의 높이

□ 차체 길이 초과



〈트레일러 후단부 길이 연장(용접)〉



〈트레일러 후단부 길이 연장〉



〈카고적재함 길이 연장〉



〈길이 및 높이 초과〉



〈차체 길이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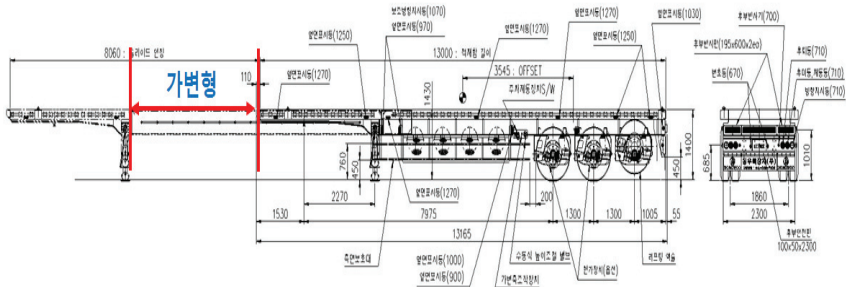
□ 차체 길이 초과(가변형 평판트레일러)



<연결고리 설치, 길이초과>



<보조적재함 임의설치>



○ 가변형 평판트레일러는 운행허가를 받고 적재함 길이를 연장하여 제한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나, 추가로 길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후단부에 연결고리를 설치(보조적재함 임의설치)한 사례

☞ 보조적재함을 거치하기 위해 설치한 연결고리가 차체길이 제원의 허용차를 초과한 경우 단속 대상

□ 차체 높이 초과



〈광고판 설치, 높이 초과〉



〈광고물 설치, 높이 초과〉



〈차체높이초과(휠,타이어 인치업)〉

○ 참고사항: 차체너비 및 높이변경 튜닝 여부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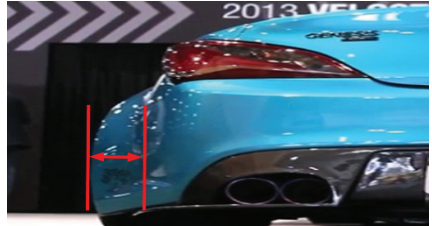
※ '18.2월 차체높이변경 튜닝 허용

□ 차체 너비 초과



〈타이어 돌출, 너비초과〉

- 참고사항: 차체너비 및 높이변경 튜닝 여부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필요
- ※ '18.2월 차체높이변경 튜닝 허용



〈적재함 너비초과〉

〈차체너비초과(오버헨더)〉

- 참고사항: 차체너비 및 높이변경 튜닝 여부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필요
- ※ '18.2월 차체높이변경 튜닝 허용

□ 차체 및 차대 임의 변경



〈걸림도어〉

〈오픈카〉

※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튜닝전보다 안전도의 저하가 우려되어 튜닝승인 제한



〈문짝 임의변경 및 범퍼 탈거〉



〈현대 천공〉



〈차체 임의변경(단, 동일 차명·차종의 캐빈으로 튜닝 가능)〉

□ 차체 및 차대 임의 변경



〈측면보호대 미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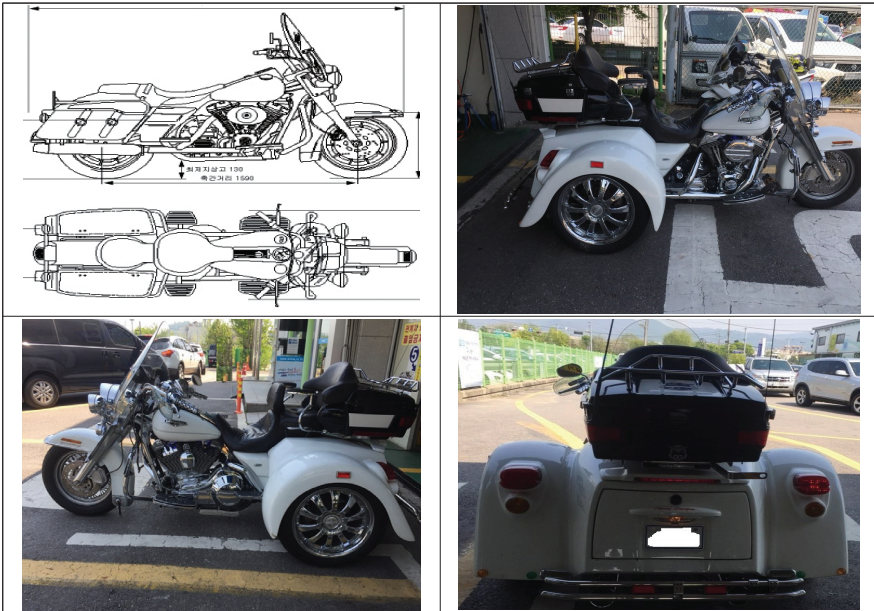


〈후부안전판 미설치〉

□ 이륜자동차 차체 및 차대 임의 변경



□ 이륜자동차 차체 및 차대 임의 변경



〈2륜 → 3륜이륜차로 임의변경〉

- 차체 너비 및 제동장치의 변경이 수반되는 변경임
- ※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 제한

□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밴형화물차)



〈적재함 격벽 제거 및 좌석 임의설치〉

○ 밴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격벽을 임의로 탈거한 경우 단속 대상(단, 적재실 측면판넬을 창유리로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튜닝에 해당됨)

※ 〈안전기준 제32조〉 밴형화물자동차의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는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 또는 최대적재량의 50%의 하중을 가할 때 300mm 이상 변형되지 아니하는 격벽으로 폐쇄할 것



〈적재실 격벽 임의개조〉

○ 적재장치 임의변경에 해당되어 단속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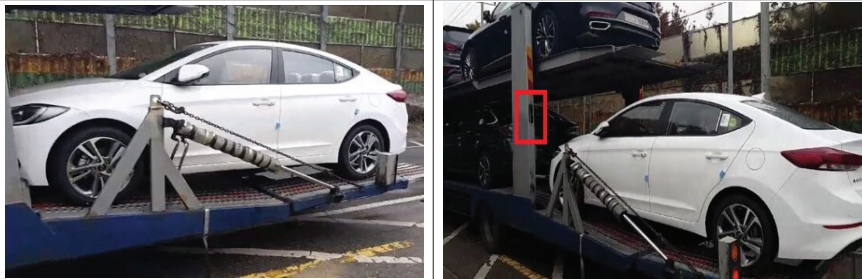
※ 〈법 제3조〉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탑승했을 때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시행규칙 별표1〉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 이상이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 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보다 넓은 자동차

□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카-캐리어)



〈적재용 사다리를 적재장치로 사용〉



〈실린더(피스톤)의 위치 변경〉

○ 카캐리어에 자동차를 적재할 때 사용하기 위한 답판을 슬라이딩 방식으로 개조하여 단속 대상

- 후단오버행 증가로 인한 조향안전성 저하

※ 제원관리번호 및 외관도 확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적재불량 및 과적운행으로 단속 가능

* 제작자동차는 등반용 사다리를 슬라이딩 방식으로 허용한 사례 있음

□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내장탑차 → 캠핑카)



- 내장탑차(워크스루밴 포함)의 적재함을 개조하여 취사 또는 취침시설을 설치(캠핑카로 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 적재장치 임의변경에 해당되어 단속 대상
 - 캠핑카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화물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승인 제한

□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잉바디 탑 적재함 상부 개방)



〈폐기물 적재 사례〉

○ 잉바디 탑차의 적재함 상부를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방한 경우 단속 대상

- 우드칩(비중: 0.325) 등 적재물의 비중에 따라 적재함의 크기가 결정되어 튜닝승인을 받고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

* 천막 덮개는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에 해당 되므로 적재함 지붕의 1면 이상 고정되어 분리되지 아니하는 형태 일 것

〈우드칩운반차 튜닝사례〉



〈우드칩 운반차〉



〈옆문 일체형〉



〈옆문분리형 튜닝 불가〉



〈적재함 덮개 예시〉

□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덤프차 덮개 → 보조틀로 사용)



〈덤프를 보조틀로 사용한 사례〉



〈격자무늬형 보조틀〉



〈자동바로 고정〉



〈O형고리 쇠사슬결속〉



〈측면부 철판 용접〉



〈후면 보조틀 설치〉



〈전면 보조틀 설치〉

-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덮개를 보조틀로 개조하여 적재함의 크기를 증가시켜 운행하는 경우 단속 대상
 - 총중량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 튜닝승인 제한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 (질의) 덤프형화물자동차의 덮개가 보조틀로 사용하는 구조인 경우의 처벌기준?
- (회신) 덤프형화물자동차의 덮개를 운행 중 적재물의 비산 및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최대적재량 증가 목적으로 추가로 보조틀을 장착하는 것은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으로 법 제34조 위반

□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상승형 윈바디 탑)



〈상승형 윈바디트럭〉

〈상승형 윈바디 임의 개조〉

- 상승형 윈바디트럭으로 자기인증(제작) 또는 튜닝된 자동차를 개조하여 적재함의 상부 크기를 증가시킨 경우 단속 대상
 - 적재함을 상승시킨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적재불량 및 과적운행으로 단속 가능

□ 냉동기 가동용 발전기 임의 설치



〈냉동컨테이너 발전기 설치〉

-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냉동기 가동용 발전기를 설치한 경우 단속 대상
 - ※ 컨테이너 운반 트레일러가 냉동기 가동을 위한 발전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총 중량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튜닝승인 가능

□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살수차 천공부위 용접)

	
<p>〈천공부위 용접 후 문설치〉</p>	<p>〈천공부위 용접〉</p>
<p>○ 최대적재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튜닝 당시 탱크의 일부를 천공한 부위를 용접하여 적재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속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튜닝승인 시 불법 개조(튜닝)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절단하는 조건으로 튜닝승인 가능 	

□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적재함 내부 탱크로리, 활어탱크 설치)





〈적재함 물탱크 또는 활어운반통 임의설치〉

○ 카고트럭의 적재함에 물탱크 와 같은 적재물을 고정·설치하여 탱크로리로 사용하는 경우 단속 대상. 다만, 비중(1.0)을 적용하여 활어운송차로 튜닝승인 가능함

※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 양수기 설치하여 적재물로 보기 어려움

〈안전기준 제32조〉 탱크로리, 살수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함

□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적재함 문짝 제거, 난간대 설치)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문짝 제거〉



〈탑 상부 난간대〉

〈적재함 문짝 제거, 난간대 설치〉

○ 적재장치 임의변경에 해당되어 단속 대상

※ 〈튜닝 고시 별표 2 튜닝승인 세부기준, 1. 기본원칙 나목〉

7)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적재함 문짝을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튜닝승인 불가(제한)

※ 난간대 튜닝승인 기준

○ 난간대의 높이는 캐빈 높이까지만 허용

○ 난간대의 파이프는 아래조건을 만족할 것

- 재질은 사각형, 원형 등 철 재질로 할 것

- 설치간격은 적재함 바닥 기준으로 가로×세로 500mm 내외로 하되 높이는 캐빈 높이 이하 일 것(전면 50kg, 후면 20kg 복합 설치 가능)

* 가스용기운반자동차, 〈용기 50kg인 경우 140cm로 2/3까지 설치로 규정〉

○ 난간대의 하대 측면 및 후면은 폐쇄할 수 없으며, 적재물이 보이는 철망 등은 설치 가능

○ 뒷문에도 난간대 설치가 가능하며, 측면과 동일하게 적용



□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카고크레인 고소작업대 설치)



- 카고크레인의 고리를 제거하고 고소작업대를 설치한 경우 차체 및 차대 임의변경에 해당되어 단속 대상
- 크레인의 달기기구를 제거하고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제2항의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튜닝승인 제한

※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는 제조단계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제6조에 따르면 '크레인'이란 훅(hook)이나 그 밖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하며, 제16조에 따르면 '고소작업대'란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를 말함.

□ 승차장치 임의변경(좌석 임의 탈거, 옆보기 좌석, 회전장치)

	
<p>〈5인승 → 1인승〉</p>	<p>〈11인승 → 8인승〉</p>
	
<p>〈좌석 회전장치 임의 설치〉</p>	<p>〈옆보기 좌석으로 임의 변경〉</p>
<p>○ 자동차의 승차장치를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한 경우 단속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라 승차정원이 10인승 이하인 경우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1인승이상인 경우 승합자동차로 구분 - 승차정원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의 변경은 튜닝승인 불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은 제한, 차체 또는 차대가 동일한 승합자동차의 승차인원을 변경하여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되는 경우(원상 복구하는 경우 포함) 가능. (예) : 카니발, 로디우스, 스타렉스, 코란도투리스모 등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별표 2 1.기본원칙 나목 5)에 따라 전방향 승차장치를 옆 방향 승차장치로 변경하는 경우 튜닝승인 제한 <p>※ 자동차등록번호판 앞 두자리 숫자가 70~79인 경우 승합자동차임</p> <p>○ 어린이운송승합차의 통로에 설치된 좌석 중 외부에서 조작이 불가능한 좌석을 임의로 설치한 경우 단속 대상</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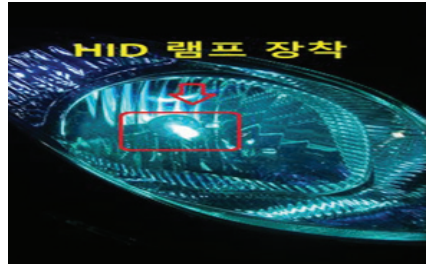
□ 등화장치 임의변경(방전식 전조등, LED전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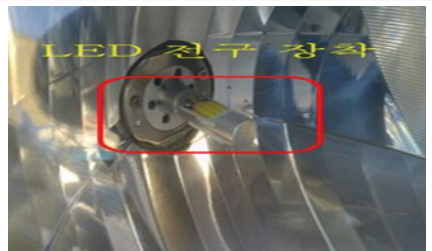
〈불법HID 전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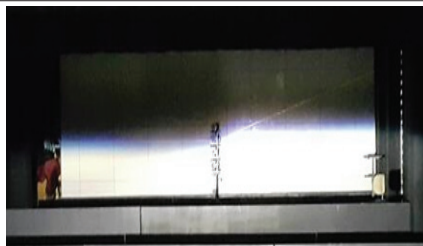
〈불법HID 전조등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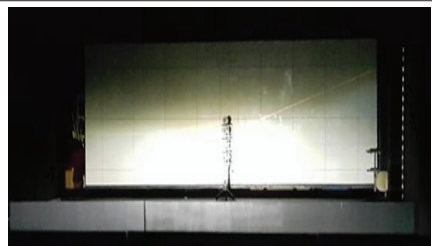
〈(이륜차)불법HID 전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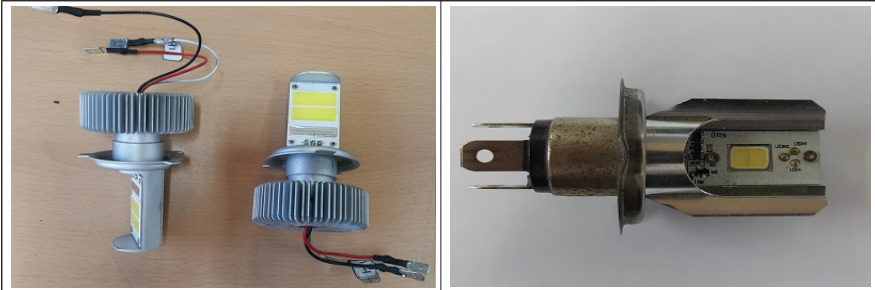
〈(이륜차)불법LED 전조등〉



〈정상 HID 전조등〉



〈불법 HID 전조등〉



〈불법 LED 전조등 전구〉

○ 자동차의 전조등을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 당시와 다른 형식의 전조등으로 임의로 변경한 경우 단속 대상

※ 정상적인 자동차의 전조등은 제작단계에서 광학적 설계(광원, 반사기, 렌즈)를 통하여 컷-오프라인 및 빛의 세기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있으나, 할로겐 전구에 적합하게 설계된 반사기, 렌즈에 광원을 HID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도 확보 어려움

〈단속 시 참고사항〉

- 자동광축조절장치(ALD) 설치 여부 확인
- 발라스터(안정기)와 일체형 여부 확인
- ※ 개조 HID전조등은 조사각 보정장치(ALD)가 없음
 - 방전식 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 또는 발광다이오드(LDE) 전조등은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ALD)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다만, 공기식 현가장치 등 전조등의 광축을 자동으로 하향 조절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예외)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의 변경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

□ 등화장치 임의변경(경광등 임의 설치)



- 경광등을 설치하려면 튜닝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하며 **긴급자동차 또는 긴급자동차로 지정 받은 자동차에 한하여 설치 가능**. 다만, 구난형 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황색 경광등 설치 가능 (싸이렌 설치 불가)
 - 경광등의 등광색만 상이한 경우는 안전기준 위반(법 제29조)으로 처리
 - 셀프러더는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아닌 화물자동차이므로 긴급자동차로 지정을 받고 설치 가능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경광등의 등광색 기준〉

구분	등광색
(가)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의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다)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라)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마) 소방용자동차	적색 또는 청색
(가) 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 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발을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라)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마)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바) 기타자동차	황색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녹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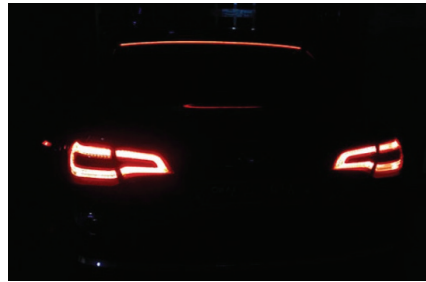
□ 등화장치 임의변경(써치램프, 보조제동등)



〈써치등화 임의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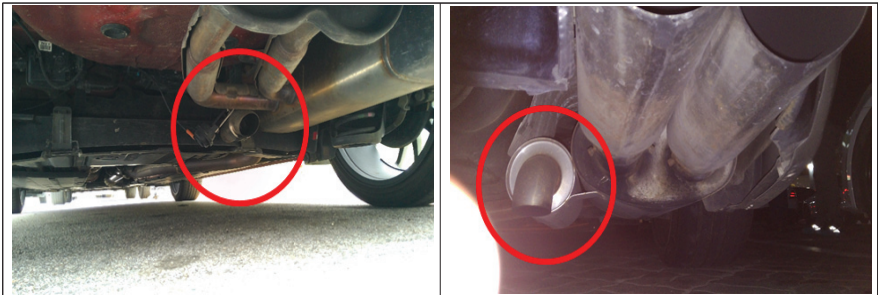
〈보조제동등 추가설치〉



〈미인증 보조제동등으로 변경〉

- 써치라이트(등화)는 긴급차에 한하여 튜닝승인을 받고 설치가 가능함
- ※ 보조제동등의 변경 없이 기능의 일부를 조작·개조하여 점멸 되는 경우는 안전기준 위반(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에 해당됨

□ 소음방지장치 임의변경



〈최종배출구 이전 배기가스 유출〉

-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방지장치를 임의로 변경 또는 탈거한 경우 단속 대상

〈참고사항〉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튜닝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소음기를 확인하여 소음기 및 배기구 개수, 최종 배출구의 내경이 등록증의 튜닝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
예) 튜닝소음기설치(소음기 2개, 배기구 4개, 내경90mm)
- 소음방지장치의 변경 없이 배기관 팁만 변경한 경우 경미한 튜닝으로 적용, 사진과 같이 배기구의 개수가 증가(1개 → 4개)되어 있더라도 소음기의 추가 또는 변경여부 확인 필요

* 적용근거: 자동차 튜닝에 관한 고시 별표1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용 예〉

- 최저지상고 10cm에 미달되는 경우
- 자동차의 배기관의 열림 방향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열려 있는 경우
 - 다만, 배기관의 열림 방향이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왼쪽으로 30도 이내인 것과 배기관이 차량중심선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오른쪽으로 30도 이내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소음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사운드 밸런스를 설치하는 경우 튜닝 대상임(소음기 통과 이후에 사운드 밸런스 설치하는 자율적으로 허용)



□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장치 임의변경



〈튜닝 승인 내역 없이 임의 변경〉

○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방지장치를 임의로 변경 또는 탈거한 경우 단속 대상

- 신고필증에 기재된 튜닝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소음기를 확인하여 소음기 및 배기구 개수, 최종 배출구의 내경이 신고필증의 튜닝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

예) 튜닝소음기(1소음기, 1배기구, 내경:50*60mm,아크라포빅)
 튜닝소음기(2소음기, 2배기구, 내경:50mm,요시무라)

〈참고사항〉 소음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배기관 끝단부에 사일런스 설치
 튜닝 후 설치된 사일런스를 탈거하여 운행 하는 경우 발생함
 - 튜닝이력의 내경사이즈와 상이한 경우 사일런스 탈거 의심

VI.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단속 사례

- 「자동차관리법」제29조 위반(행정벌 대상), 제50조 위반
 - (벌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4조 적용)
 - *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참조
- 대상자
 - 제29조 및 제50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등화장치 개조, 착색, 필름부착, 손상





- 제작사에서 제작한 등화장치는 부품자기인증 등 인증절차를 통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등화장치의 일부를 개조하거나 필라멘트 전구를 LED전구로 변경하거나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 설치



-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등화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기준 위반으로 처리

□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안전기준 위반 사례



방향지시등 등색 상이



차폭등 LED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 설치

- 제작사에서 출고 당시 자기인증 등 인증 절차를 통하여 장착된 등화 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등화장치의 일부를 개조하거나 일반 전구를 LED전구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됨

□ 배기관 안전기준 위반



○ 배기관의 열림 방향 우향 및 배기관과 범퍼의 접촉으로 자동차의 발화 위험으로 안전기준 위반

〈관련근거〉

안전기준 제37조(배기관) ① 자동차 배기관의 열림방향은 자동차의 길이방향에 대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45도를 초과해 열려 있어서는 안 되며, 배기관의 끝은 차체 외측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삭제 〈2018. 12. 31.〉

③ 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74조 (배기관) : 이륜자동차의 배기관은 적재물등을 발화시키거나 이륜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어린이운송용승합차 색상기준 위배



○ 안전기준 제19조제8항에 따라 어린이운송용승합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함

□ 후부안전판, 후부반사지 미부착 및 기준 위반



〈후부반사판 미부착〉

〈후부안전판 규격 미달〉



〈후부반사판 손상〉

〈참고자료〉

○ 측면보호대, 후부안전판, 후부반사판 안전기준 연혁 및 적용시기

시행일	측면보호대	후부안전판	후부반사판(반사지)
'87.9.28	총중량 8t이상 화물자동차	또는 적재량 5t이상	-
'90.6.1	총중량 8t이상 특수자동차	또는 적재량 5t이상 화물,	-
'96.1.1	총중량 8t이상 특수, 연결자동차	또는 적재량 5t이상 화물,	-
'97.7.1	-	-	총중량 8t이상 또는 적재량 5t이상 화물, 특수자동차
'01.10.29	-	총중량 3.5t이상 화물, 특수, 연결자동차	총중량 8t이상 또는 적재량 4.5t이상 화물, 특수자동차
'07.1.1	-	-	총중량 7.5t이상 화물, 특수자동차

○ 측면보호대 설치 기준(안전기준 제19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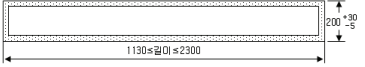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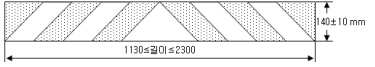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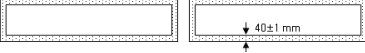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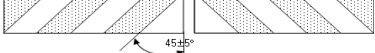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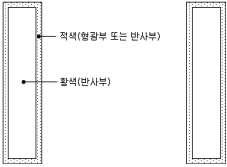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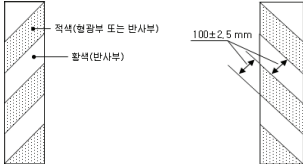


1.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뒷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뒷바퀴와의 간격을 400밀리미터 이내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 앞·뒷바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측면보호대의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측면보호대의 가장 윗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9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 가장 윗부분과 차체 바닥면과의 간격이 350밀리미터 이하일 경우는 제외한다.
4. 측면보호대 가장 바깥쪽 면은 차체의 가장 바깥쪽 면보다 안쪽에 위치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15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측면보호대의 뒷부분부터 최소한 250밀리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측면보호대의 가장 바깥쪽 면이 차체의 가장 바깥쪽 면부터 타이어의 가장 바깥쪽 면의 안쪽으로 30밀리미터까지에 해당하는 구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측면보호대 각각의 단면 높이는 50밀리미터 이상이고, 측면보호대 사이의 높이 간격은 3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6. 측면보호대에 1킬로뉴턴의 하중을 가할 때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측면보호대의 뒷부분부터 250밀리미터까지는 30밀리미터, 그 외 구간은 150밀리미터 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 후부안전판 설치 기준(안전기준 제19조제4항)

1. 후부안전판의 양 끝 부분은 뒷차축 중 가장 넓은 차축의 좌·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면(지면과 접지되어 발생하는 타이어 부풀림양은 제외한다) 지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면 지점부터의 간격은 각각 100밀리미터 이내일 것
2.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내일 것

3.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
4. 좌·우 측면의 곡률반경은 2.5밀리미터 이상일 것
5. 지상부터 2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 후단부터 차량길이 방향의 양쪽으로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6. 화물 하역장치 등이 설치되어 해당 작동부로 인하여 후부안전판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화물 하역장치 등과 후부안전판 끝부분과의 간격은 각각 25밀리미터 이하일 것
 - 나. 분리된 후부안전판 각각의 면적은 최소 35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너비가 2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후부반사판의 형상 및 부착방법(안전기준 별표6의28)

부착 형식	피견인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제외)
형식 1		
형식 2	 크기 : 형식1 길이의 1/2	 크기 : 형식1 길이의 1/2
형식 3	 크기 : 형식2와 같음	 크기 : 형식2와 같음
형식 4	 크기 : 형식3 길이의 1/2	 크기 : 형식3 길이의 1/2

주)

1. 위 4가지 형식 중 하나의 형식으로 부착할 것
2. 저상트레일러에 형식 1 또는 형식 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판의 너비를 140±10mm, 적색 테두리의 두께를 20±1mm로 할 수 있다.
3. 양산자동차 후부반사판의 반사성능 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제1호를 만족해야 한다.

□ 연결장치 체인·와이어로프 미설치



- 차량총중량이 1.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는 주행 중 연결장치가 분리 시 연결봉 등이 지면에 닿지 않는 구조의 보조연결장치(체인·와이어로프 등)를 설치할 것
 - 다만, 주행 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의 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는 제외

□ 예리하게 각이 진 모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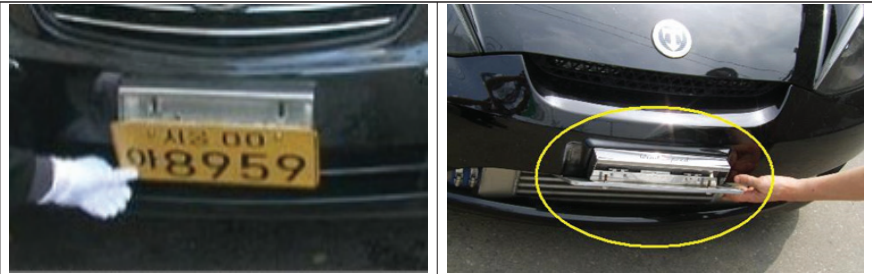


- 스포일러 등을 차체의 길이·너비 및 높이가 변경되지 아니하게 설치한다 하더라도 모서리 부위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된 경우에는 안전기준 제19조 “차대 및 차체” 위반

Ⅶ. 등록번호판 위반 사례

- 「자동차관리법」제10조 위반 및 제49조 위반(형사벌 또는 행정벌)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적용)
 - *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 (벌칙)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4조 적용)
 - * 번호판 봉인 탈락 또는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 한 자
 - *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참조
- 「자동차관리법」제71조 위반
 -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78조 적용)
 - *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한 경우

□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안보이게 한 경우(형사벌 대상)



〈꺼기번호판〉



〈자동스크린가드, 버튼으로 조작〉



〈전동회전 번호판, 버튼으로 조작〉



〈번호판 가드에서 LED 불빛〉



〈이동식카메라 레이저 교란 장치〉



〈위저드 번호판〉

- 얇은 필름(가드)을 번호판위에 부착하여 카메라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원리로 자동차번호판 부위만 CCTV로 촬영이 불가하게 하는 장치



〈이륜자동차 - 꺾기번호판〉

- 주행 중 번호판의 각도를 조절하는 장치 부착으로 인해 등록번호판 식별 불가

□ 등록번호판 부정사용(형사벌 대상)



〈번호판 위조, 고무판 이용〉



〈번호판 위조〉

□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봉인 탈락(행정벌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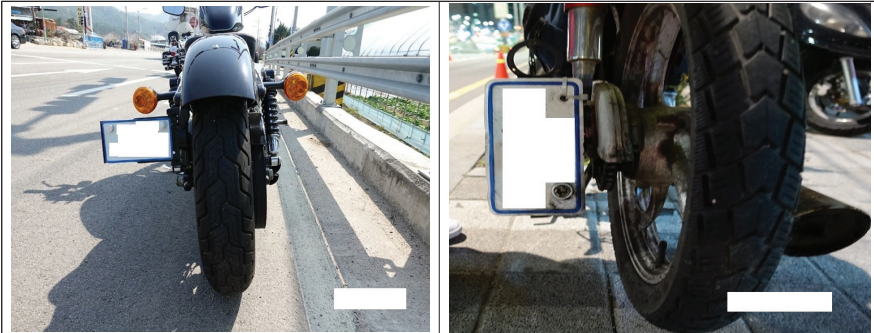
〈번호판 봉인 탈락〉

〈번호판 스티커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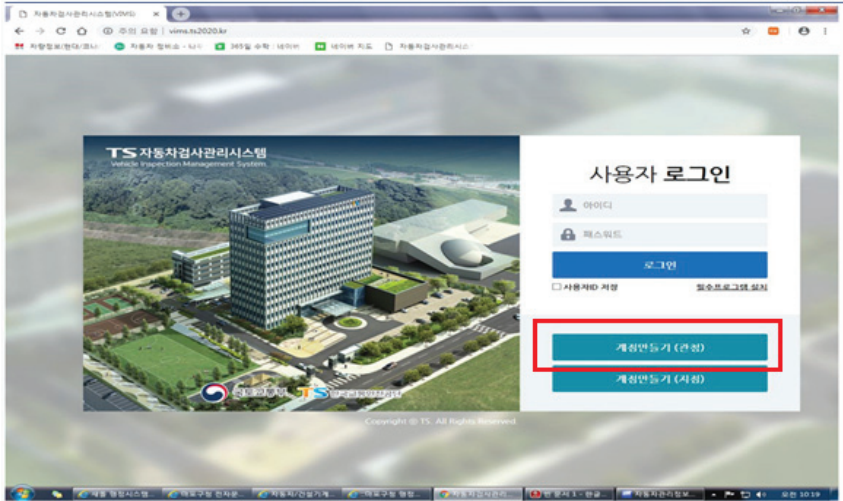
〈번호판 색바램〉

〈번호판 봉인 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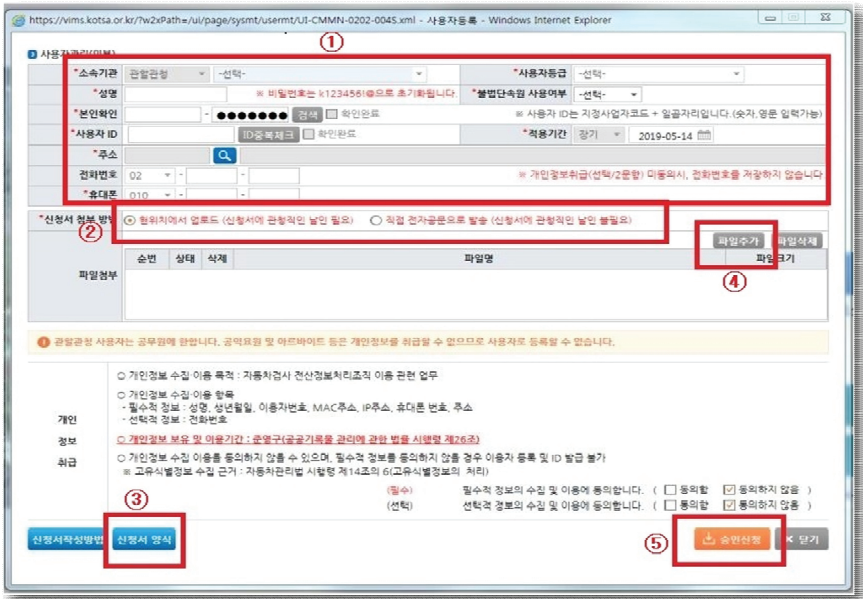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번호 등은 뒷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번호판의 위치 변경은 상·하만 가능함

VIII. 안전단속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1. <http://vims.ts2020.kr/> 접속



◇ 전산 사용권한 신청 (신규, 변경)

- 1) 계정만들기(관청) 선택
- 2) 소속 및 개인정보 입력(불법단속원 사용여부는 “사용”으로 선택)
- 3) 현 위치에서 업로드 또는 직접 전자공문으로 발송 선택
- 4) 신청서 양식 작성(직접업로드는 직인날인 필수)
- 5) 작성된 신청서를 스캔파일로 업로드(온나라 공문서 발송 가능)
- 6) 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체크 후 승인신청

〈신청서 양식〉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자 []신규 []변경 []말소 등록 신청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의 경우, 제17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이 용 자	성명		비 고
	주민등록번호		※관할관청인 경우 생년월일만 기입
	이용자번호 (ID) (숫자-영문조합7자리)		예) abc1234
	휴대폰번호		000-0000-0000
자	담당업무		자동차검사, 교학/관경과 업무
	운용기간		예) 2018.3.12. 부터/까지/말소 시 등
개 인 정보 취 급	신청목적		신규/해임/변경 등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자동차검사 통합전산 정보처리조직 이용 관련 업무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필수적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자번호, 담당업무 - 선택적 정보 : 휴대폰 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1년)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수적 정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등록 및 ID 발급 불가 ※ 고유식별정보 수집 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필수적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자동차검사 통합 전산정보처리 조직 운영지침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자 등록(말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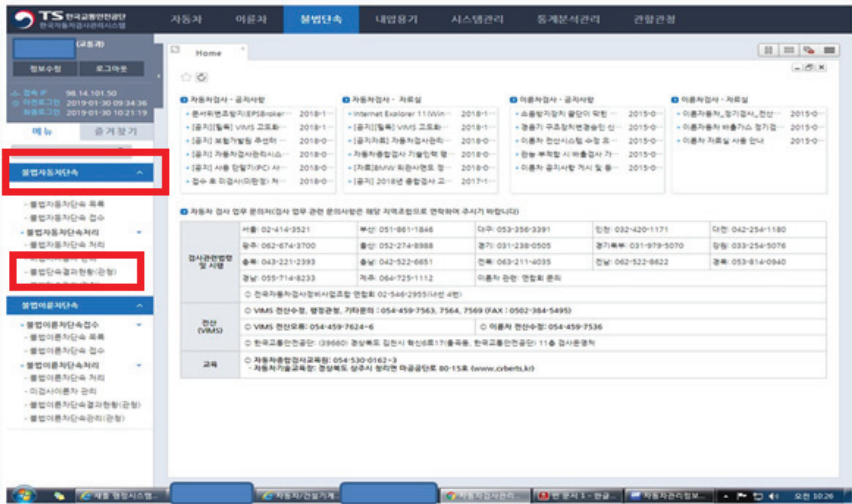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 말소의 경우 없음	<input type="checkbox"/>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1.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현황 1부(별지 제12호 서식: 신규 신청에 한함) 2. 종합검사기술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재직증명서 1부(신규 신청에 한함) 4.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임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내압용기정비업자 및 파기업자 1. 재직증명서 1부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비교란에 자동차검사, 전문정비, 내압용기정비, 내압용기파기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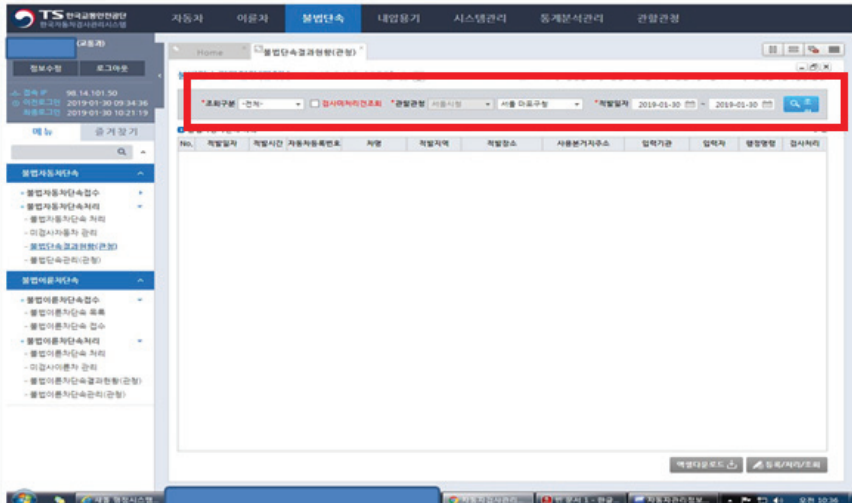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매뉴얼





3. 불법자동차(불법이륜차)단속처리 → 불법단속결과관리현황(불법이륜차단속결과관리현황) 클릭



4. 조외구분 클릭 후(단속처리대상) → 관할관청 선택 → 적발일자 기간설정 → 조외클릭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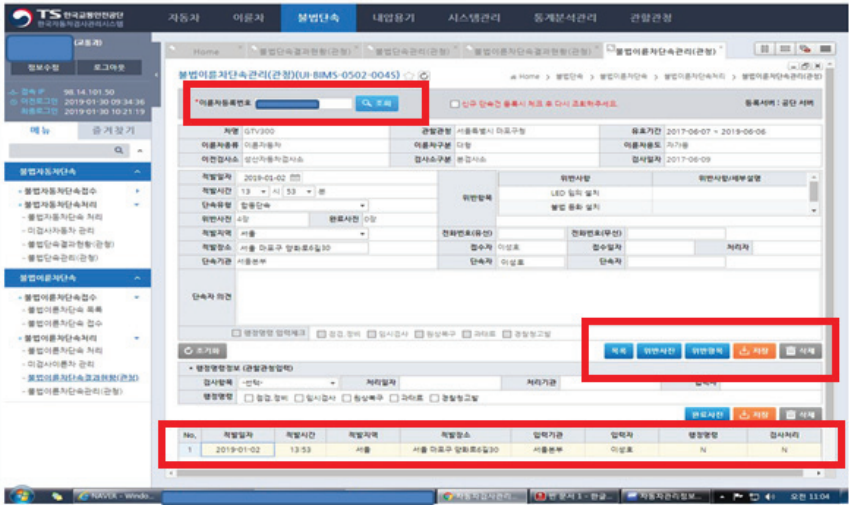
The screenshot shows the '불법단속결과조회(관청)' (Illegal Vehicle Enforcement Result Search) page. A table lists enforcement records with columns for No., Enforcement Date, Enforcement Time, Vehicle License Number, Vehicle Name, Enforcement Location, Enforcement Status, Vehicle Category, Search Status, Search Method, Search Result, Search Date, and Search Status. A red box highlights the first three rows of this table.

No.	제발일자	제발시간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제발지역	제발장소	사용분류구분	입력기관	입력자	행정명칭	검사차리
1	2019-07-24	14:40	그림드기-15	서울	송파구 송파로	서울특별시	이동차	서울본부	이영호	N	N
2	2019-12-10	15:22	그림드기-15	서울	서대문구 원나들길	서울특별시	이동차	서울본부	이영호	Y	Y
3	2019-12-08	14:30	가거트차	서울	관악구 수서로	서울특별시	이동차	서울본부	이영호	Y	Y

5. 조인된 차량리스트 항목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The screenshot shows the '불법이륜차단속관리(관청)' (Illegal Motorcycle Enforcement Management) page. A red box highlights the 'vims.ts.2020.kr 내용:' field, which contains the text '2019년 05월 02일 불법이륜차에 차량입니다.' (Vehicle on illegal motorcycle on May 2, 2019). Below this, there is a '제리움입니다...' (It's Jeonju) pop-up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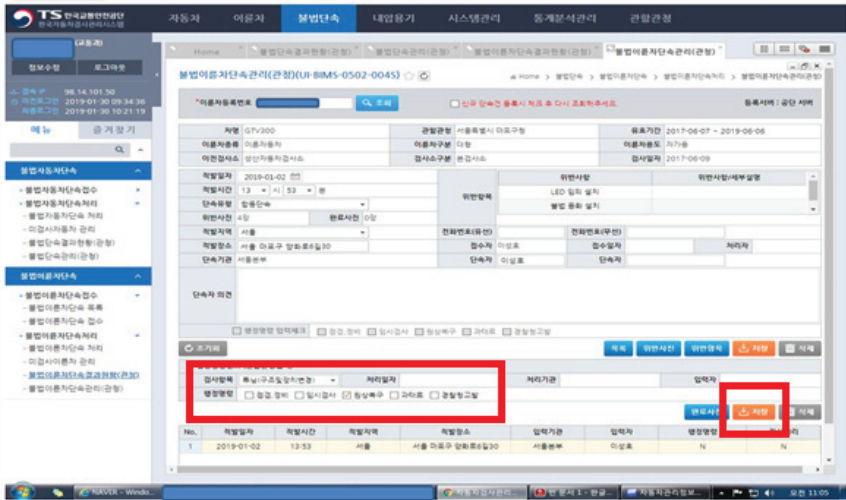
6. 배너가 뜨면 단속일자 확인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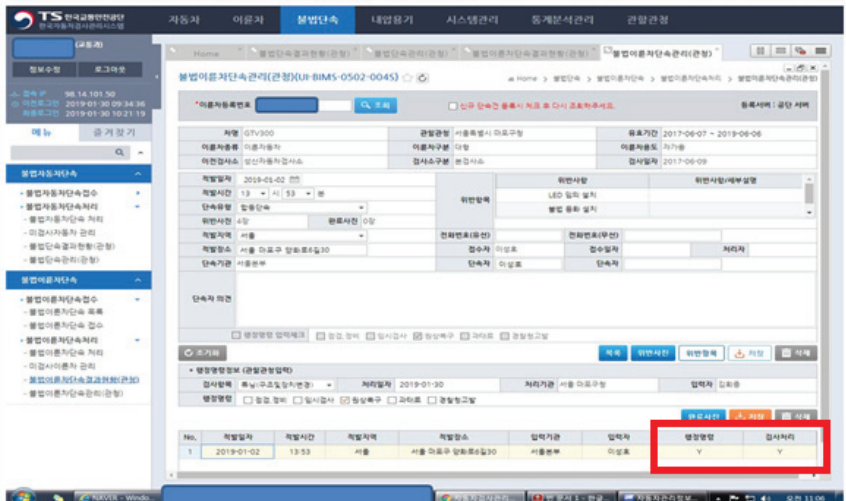
7. 단속시행 확인기능 차량정보, 적발일시 및 장소, 위반사항(항목) 및 사진, 행정명령정보



8. 단속시행 상세확인기능 차량정보, 적발일시 및 장소, 위반사항(항목) 및 사진, 행정명령 정보



9. 행정명령정보(행정처분 사항) 입력 후 주황색 저장 버튼 클릭



10. 행정명령정보 입력완료(행정명령 및 검사처리가 "N" 에서 "Y" 로 바뀐다.)

IX 참고 자료

□ 길이 너비 등에 대한 특례기준(안전기준 별표31)

길이·너비 등에 대한 특례기준(제114조제1항 관련)

항목	특례기준	대상차종
길이	19미터 이내	가. 플트레일러 연결자동차 나. 저상트레일러 연결자동차 다. 센터차축트레일러 연결자동차 라. 굴절버스
너비	2.75미터 이내	가. 컨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럭, 컨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레일러 나. 저상트레일러 다. 보도용 자동차(TV중계차 등) 라. 환경측정용 자동차 마. 2층대형승합자동차
최대안전경사각도	30도	가. 콘크리트 운반전용의 자동차 나.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이하인 화물 및 특수자동차 다. 삭제 <2010.3.29>
최소회전반경	15.5미터 이내	가. 보도용 자동차(TV중계차 등) 나. 특수구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의 제작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완충장치	설치 예외	가. 노면청소작업차 나. 특수구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의 제작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서리 및 안개 제거장치, 환기장치	설치 예외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주) 길이 항목의 대상차종 중 플트레일러 및 센터차축트레일러 연결자동차의 주행폭원은 차로중심선의 반경(R_c) 140미터를 적용한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값이 2.896미터보다 작은 값이어야 한다.

$$\text{※ 계산식 } B = \sqrt{(\sqrt{R_c^2 - (a + U_f)^2} + \frac{b}{2})^2 + (a + U_f)^2} + \frac{b_2}{2} - \sqrt{R_c^2 - (a + U_f)^2 - a_2^2 + a_s^2}$$

- B : 자동차의 주행폭원
- R_c : 차로중심선의 반경
- a : 견인차의 축간거리
- a_2 : 피견인차의 축간거리
- a_s : 연결편에서 견인차의 뒤축까지의 거리
- U_f : 앞내민길이
- b : 견인차의 폭
- b_2 : 피견인차의 폭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참고자료

○ 대상 차종 및 적용시점

차종	규 모 별	세 부 차 종	제한 속도	시행시기 (제작일 기준)
승합차	총중량10톤이상 (운송사업용 중)	시외버스(일반시외제외) 전세버스	100km	1996.01.01~
	총중량10톤이상 (비사업용포함)		110km	2006.02.10~
	총중량4.5톤초과10톤 미만		110km	2012.08.16~
	총중량4.5톤이하		110km	2013.08.16~
화물·특수차	총중량16톤이상(적재량8톤이상 포함)화물차 중	소방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수량이상위험물운반 탱크로리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80km	1996.01.01~
		덤프형,콘크리트운반차		1996.01.0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		1996.04.0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 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		1997.02.0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 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	90km	2005.08.10
	총중량16톤이상 또는 적재량8톤이상,견인차 포함		90km	2006.02.10~
	총중량3.5톤초과 16톤 미만		90km	2012.08.16~
저속전 기자동차			60km	2010.03.29~

주 1) 소방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시행령 별표2)

1. 특수인화물류(50리터) :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및 콜로디온
2. 제1석유류(100리터) : 아세톤 및 휘발유
3. 제2석유류(1000리터) : 등유, 경유
4. 제3석유류(2,000리터) : 중유, 클레오소오트유
5. 제4석유류(6,000리터) : 기계유, 실린더유
6. 알코올류(200리터), 동식물유류(10,000리터)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1. 상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를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온의 온도에서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화가스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 현행 안전기준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②다음 각 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합자동차
2.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는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 저속전기자동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110킬로미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90킬로미터
3. 제2항제4호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 매시 60킬로미터

○ 무단으로 조작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법 제7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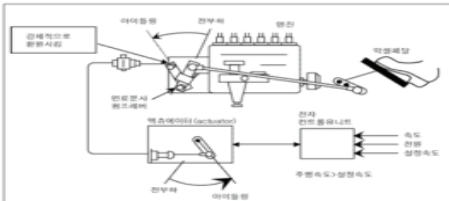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5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

○ 속도제한장치 안전기준을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더.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 제8조제2항제7호의 전기·전자장치 중 최고속도 제한장치 및 제8조제2항제18호 중 운행기록계	법 제84조제2항 제13호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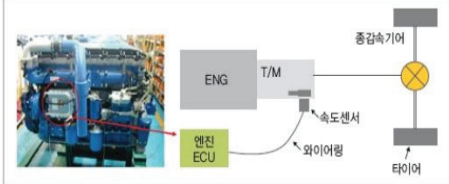
○ 작동원리

<기계식>



속도가 설정속도를 초과하면, 엑추에이터 케이블에 의해 연료분사 펌프 레버를 아이들링으로 환원시키기 때문에 연료의 공급이 제한되어 속도가 억제됨

<전자식>



자동차 자체 ECU의 엔진제어장치에 입력된 속도보다 초과된 속도가 입력되면 연료량을 제한하여 속도를 줄이는 방식

□ 자동차의 제원측정 방법(안전기준 시행세칙 별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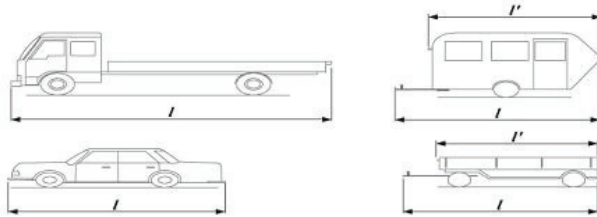
○ 측정조건

- 자동차는 공차상태로 하고 직진상태로 수평한 수평면에 놓여진 상태로 한다.
- 타이어의 공기압력은 보통의 주행에 필요한 표준공기압(압력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값, 표준공기압이 없는 경우에는 제작자가 제시한 공기압력)으로 한다.
- 자동차의 고정 탑재장치는 탑재된 상태로 하며 접을 수 있는 장치(사다리, 크레인 등을 말한다)는 접은 상태로 한다.
- 외개식의 창, 환기장치등은 닫은 상태로 휩식 안테나, 후사경(브라켓을 포함한다)등은 제거한 상태로 하며 포올안테나는 최저의 상태로 한다.
- 좌석의 위치가 전·후 또는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좌석은 각 좌석의 기준위치에 고정된 상태로 한다. 다만, 좌석을 기준위치에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방 또는 전방으로 고정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로 한다.
- 좌석등받이의 부착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의 경우에는 기준위치에 고정상태로 한다.
- 견인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는 드로우아이의 중심축이 연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 측정단위는 밀리미터로 한다.
- 피견인 자동차의 경우 높이에 관계되는 항목의 측정은 제원표상의 명시된 형식의 연결트랙터에 연결된 상태로 한다.
-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트레일러 차체의 길이 및 너비를 조절할 수 있거나 적재화물이 트레일러 차체 역할을 하는 가변차체 트레일러의 경우에는 차체의 길이 및 너비가 가장 짧은 공차상태에서 측정한다.

○ 길이

- 자동차의 최전단(세미트레일러인 경우 연결장치의 연결부위 중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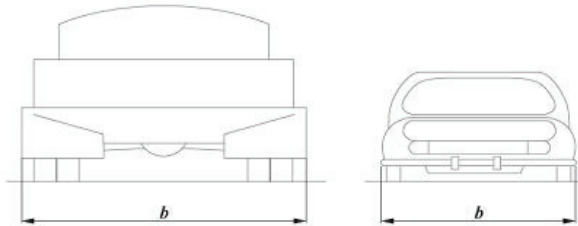
최후단을 기준면에 투영시켜 차량 중심선에 평 방향의 최대거리를 측정한다.



l : 자동차의 길이
 l' : 견인장치의 길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길이
 [그림 1-1] 자동차의 길이

○ 너비

- 자동차의 전면 또는 후면을 투영시켜 차량중심선에 직각인 방향의 최대거리를 측정한다. 다만, 측면보조방향지시등 및 옆면표시등은 측정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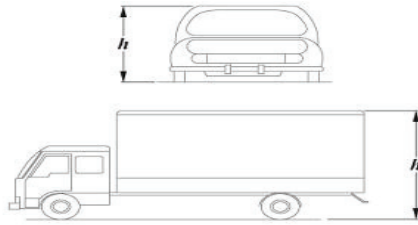
b : 자동차의 너비
 [그림 1-2] 자동차의 너비

○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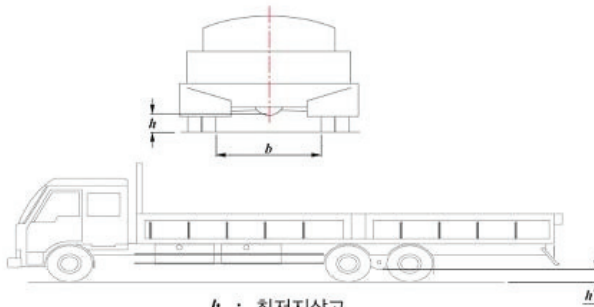
- 자동차의 전면, 후면 또는 측면을 투영시켜 차량중심선에 수직인 방향의 최대거리를 측정한다.

○ 최저지상고

- 기준면과 자동차 중앙부분의 최하부와의 거리를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 하부에 부착된 고무재질의 에어 디플렉터 등은 측정시 제외한다. 이 경우 중앙부분이란 차륜내측 너비의 80퍼센트를 포함하는 너비로서 차량 중심선에 좌·우가 대칭이 되는 너비를 말한다.



h : 자동차의 높이
[그림 1-3] 자동차의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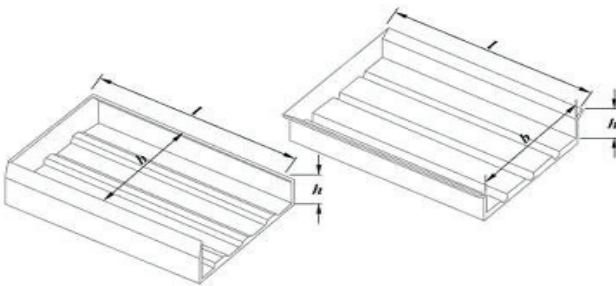


h : 최저지상고
 b : 차륜내측너비
[그림 1-12] 자동차의 최저지상고

○ 물품적재장치의 치수

- **적재장치의 내측길이:**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차량중심선에 평행한 적재함 내부의 앞·뒤 끝면 사이의 최단거리, 밴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실 최후방 좌석 등받이(머리지지대 제외)높이의 격벽에서 적재장치의 최후단 바닥의 좌우 중간점까지의 차량길이 방향 수평 거리를 측정한다.
- **적재장치의 내측너비:** 적재함의 내측너비는 차량중심선에 직각인 좌우 내측측벽 사이의 최단거리를 측정하여야 하며 밴형 및 상자형은 적재장치 내측높이의 2분의1의 위치에서 차량 중심선에 직각인 수평한 내측직선간의 거리를 측정 하여야 한다. 다만, 창유리와 교차할 경우에는 창유리 아래의 가장자리와 연결되는 내측측면 벽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 **적재장치의 내측높이:**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적재함 바닥면으로부터 측벽상단(보조대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대의 상단)베틀형 또는 상자형의 자동차는 적재함 천전까지의 최대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다만, 적재함 바닥에 파형의 굴곡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에 있어 a부의 총면적이 b부의 총면적보다 적을 때는 파형굴곡 아래면에서 a와 b부의 면적이 같거나, a부의 면적이 b부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파형굴곡 윗면에서 측정한다.



l : 적재장치의 내측길이
 b : 적재장치의 내측너비
 h : 적재장치의 내측높이

[그림 1-13-1] 물품적재장치의 길이, 너비, 높이

□ 주간주행등 설치 기준(안전기준 별표 6의8)

가. 설치위치

1) 너비

주간주행등의 발광면간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 전폭이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높이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외측 20도·내측 2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라.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점등형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작동기준

1)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위치에서 자동으로 점등될 것.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소등될 수 있다.

가) 자동변속기 조종장치가 주차위치 시

나) 주차제동장치 작동 시

다) 원동기 시동 후 최초 이동전

2)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을 점등할 때 자동으로 소등될 것. 다만, 전 조등의 주행빔을 경고의 뜻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추가적인 요구사항

1) 주간주행등과 연동되어 차폭등 또는 후미등이 점등될 수 있다.

2) 앞면방향지시등과 거리가 40밀리미터 이하인 주간주행등의 경우 방향지시등 점등 시 방향지시등이 점등되는 쪽의 주간주행등이 소등되거나 좌·우측 주간주행등의 광도를 감광하여 점등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2] <개정 2018. 4.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 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2)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 가)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경우 다) 경과 기간이 105일 이상인 경우	법 제84조 제3항제1호·제5호		50	
나. 법 제8조제3항 또는 법 제58조제8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 제4항제7호의2		10	
다. 법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법 제84조 제3항제1호의2		100	
라. 법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 제3항제2호		50	
마. 법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 제3항제3호		10	
바. 법 제10조제4항(법 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4조 제2항제1호	50	150	250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매뉴얼

<p>사. 법 제10조제5항(법 제10조제7항 및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법 제84조 제2항제2호</p>	<p>50</p>	<p>150</p>	<p>250</p>
<p>아.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p> <p>1)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p> <p>2)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174일 이내인 경우</p> <p>3)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인 경우</p>	<p>법 제84조 제4항제2호</p>	<p>2</p> <p>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p> <p>30</p>		
<p>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p> <p>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p> <p>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p> <p>다)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p> <p>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p>	<p>법 제84조 제4항제2호</p>	<p>5</p> <p>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p> <p>50</p> <p>20</p>		
<p>차.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p> <p>1)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p> <p>2)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p> <p>3) 신고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p>	<p>법 제84조 제3항제6호</p>	<p>5</p> <p>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p> <p>50</p>		
<p>카. 법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84조 제3항제7호</p>			

<p>1)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p> <p>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p> <p>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p> <p>다)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p> <p>2)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p>				
<p>타. 법 제22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84조 제2항제3호</p>	<p>100</p>	<p>200</p>	<p>300</p>
<p>파.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p> <p>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p> <p>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p> <p>3)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p>	<p>법 제84조 제3항제10호</p>		<p>50</p> <p>10</p> <p>5</p>	
<p>하.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경우</p>	<p>법 제84조 제2항제4호</p>	<p>50</p>	<p>150</p>	<p>250</p>
<p>거.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p> <p>1)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p> <p>2)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p>	<p>법 제84조 제2항제5호</p>	<p>30</p> <p>50</p>	<p>100</p> <p>150</p>	<p>150</p> <p>250</p>
<p>너.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84조 제3항제12호</p>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매뉴얼

<p>1)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p> <p>2)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106일 이내인 경우</p> <p>3) 반납 지연기간이 107일 이상인 경우</p>		<p>3</p> <p>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p> <p>100</p>
<p>더.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p> <p>1) 보고기한을 경과한 경우</p> <p>가)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p> <p>나)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경우</p> <p>다) 경과 기간이 105일 이상인 경우</p> <p>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p>	<p>법 제84조 제1항제1호</p>	<p>5</p> <p>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p> <p>100</p> <p>100</p>
<p>러.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p> <p>1) 제8조제2항제7호의 전기·전자장치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제8조제2항제18호 중 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p> <p>2) 제8조제1항제5호·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17호 중 광각 실외후사경 및 같은 항 제17호의2</p> <p>3) 제8조제2항제11호·제19호</p> <p>4)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차측은 제외한다), 제3호, 제6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7호(광각 실외후사경은 제외한다) 및 제18호(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p>	<p>법 제84조제3항제13호</p>	<p>100</p> <p>30</p> <p>5</p> <p>3</p>
<p>머. 법 제30조의3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1조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p>	<p>법 제84조제3항제14호</p>	<p>100</p>

제33조제3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버. 법 제31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15호	100
서.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법 제33조제1항·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3호	50
어. 법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15호의2	10
저.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13호의2	
1)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는 제외한다)		100
2)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		30
처. 법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1항제2호	500
커.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5호·제6호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30
터. 법 제45조제8항(법 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16호	10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매뉴얼

<p>퍼.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p> <p>1) 제작·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p> <p>2)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p> <p>가) 검정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p> <p>나) 검정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p> <p>다) 검정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p>	<p>법 제84조제3항제17호</p>	<p>100</p> <p>30</p> <p>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p> <p>50</p>
<p>허.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p>	<p>법 제84조제3항제18호</p>	<p>50</p>
<p>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p> <p>1)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p> <p>2)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180일 이내인 경우</p> <p>3) 신고 지연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경우</p>	<p>법 제84조제4항제2호</p>	<p>2</p> <p>6</p> <p>10</p>
<p>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경우</p>	<p>법 제84조제4항제2호</p>	<p>20</p>
<p>도. 법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84조제4항제7호</p>	<p>30</p>
<p>로.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p> <p>1)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p> <p>2) 그 밖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법 제34조의 구조·장치 변경승인 대상은 제외한다)</p>	<p>법 제84조제3항제19호</p>	<p>20</p> <p>3</p>
<p>모.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p>	<p>법 제84조제3항제20호</p>	<p>100</p>

보. 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84조 제4항제9호	30
소.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양도·양수 또는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 제3항제21호	100 10
오. 법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법 제84조 제3항제21호의2	30
조. 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 제3항제22호	30
초. 법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1) 법인인 경우 2) 법인이 아닌 경우	법 제84조 제3항제23호	70 35
코. 법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법 제84조 제3항제24호	30
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84조 제4항제8호	20

부 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4. 17] [국토교통부령 제612호, 2019. 3.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044-201-38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제4항, 제29조의3제1항·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 17., 2003. 2. 25., 2005. 8. 10., 2009. 1. 23., 2014. 2. 21., 2017. 1. 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7. 21., 1997. 1. 17., 1997. 8. 25., 1999. 2. 19., 2001. 4. 28., 2004. 8. 6., 2005. 8. 10., 2006. 4. 14., 2006. 10. 26., 2008. 1. 14., 2008. 12. 8., 2009. 1. 23., 2010. 3. 29., 2010. 11. 10., 2011. 3. 16., 2011. 8. 31., 2012. 2. 15., 2012. 7. 9., 2014. 6. 10., 2017. 1. 9., 2017. 11. 14., 2018. 7. 11.>

1. "공차상태"란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예비부품 및 공구 기타 휴대물품을 포함한다)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연료·냉각수 및 윤활유를 만재하고 예비타이어(예비타이어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적차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인(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의 중량은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시키며,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시킨 상태여야 한다.
 3. "축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윤중을 합한 것을 말한다.
 4. "윤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을 말한다.
 5. "차량중심선"이라 함은 직진상태의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앞차축이 설치되지 아니한 3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바퀴의 접지부분 중심점을 앞차축의 중심점으로 본다)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하며,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앞·뒷바퀴(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측차를 제외한다)의 타이어접지부분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한다.
 6. "차량중량"이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하며, 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미완성 자동차 제작자가 해당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7.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하며, 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미완성 자동차 제작자가 해당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중량으로서 단계제작 자동차 제작자가 최대로 제작할 수 있는 최대허용총중량을 말한다.
 8. "플레일러"란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대부분을 해당 자동차의 차축으로 지지하는 구조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 8의2. "저상트레일러"란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세미트레일러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대부분의 상면시상고가 1,100밀리미터 이하이며 견인자동차의 커플러 상부높이보다 낮게 제작

- 된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 8의3. "세미트레일러"란 그 일부가 견인자동차의 상부에 실리고, 해당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 부분을 견인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 8의4. "센터차축트레일러"란 균등하게 적재한 상태에서의 무게중심이 차량축 중심의 앞쪽에 있고,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수직방향으로 굴절되지 아니하며, 차량총중량의 10퍼센트 또는 1천 킬로그램보다 작은 하중을 견인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로서 1개 이상의 축을 가진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 8의5. "모듈트레일러"란 초대형 중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2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9. "연결자동차"라 함은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의 자동차를 말한다.
10. "접지부분"이라 함은 적정공기압의 상태에서 타이어가 지면과 접촉되는 부분을 말한다.
11. "조향비"라 함은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와 조향바퀴의 조향각도와의 비율을 말한다.
12. 삭제 <2001. 4. 28.>
13. "승차정원"이라 함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4. "최대적재량"이라 함은 자동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된 물품의 최대중량을 말한다.
15. "유효조광면적"이라 함은 등화렌즈의 바깥둘레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반사기렌즈의 면적과 등화부착용 나사머리부의 면적등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16. "간접시계장치"란 거울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앞면, 뒷면 또는 옆면의 시계(視界)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 16의2.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하여 간접시계확보를 하는 장치를 말한다.
17. "조향기둥"이라 함은 조향핸들축을 둘러싸고 있는 외장부분을 말한다.
18. "조향핸들축"이라 함은 조향회전력을 조향핸들에서 조향기둥으로 전달하는 축을 말한다.
19. "머리충격부위"라 함은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착석기준점 및 착석기준점 앞 127밀리미터의 지점(조절범위가 127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에서 위로 19밀리미터지점에서,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서 지름이 165밀리미터인 구형의 머리모형을 지닌 측정장치의 머리모형의 가장 윗부분을 736밀리미터(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좌석등받이 시험의 경우에는 600밀리미터)에서 838밀리미터까지 조절할 때에 그 머리모형이 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표면중 유리면외의 차실안의 표면을 말한다.
20. "착석기준점"이라 함은 좌석(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뒤의 위치의 좌석을, 좌석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위치의 좌석을,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설계각도로 조절한 상태의 좌석을 말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체와 골반사이의 회전중심점 또는 제작자등이 정하는 이에 상당하는 표준설계위치를 말한다.
21. "골반충격부위"라 함은 착석기준점에서 위로 178밀리미터, 아래로 102밀리미터, 앞으로 204밀리미터, 뒤로 51밀리미터로 결정되는 지면과 수직인 직사각형을 좌우로 이동할 경우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
22. 삭제 <1995. 12. 30.>
23. "전방중량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24.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란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부착구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차체 또는 좌석 등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말한다.
25.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라 함은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하여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 하여 줌으로써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 25의2. "주제동장치"라 함은 주행 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 25의3. "비상제동장치"라 함은 주행 중에 주제동장치의 계통 중 하나의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 25의4. "자동제어제동"이란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과는 관계 없이 전자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제동을 말한다.
 - 25의5. "선택적 제동"이란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과는 관계 없이 전자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차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제동을 말한다.
 - 25의6. "긴급제동신호장치"란 자동차의 주행 중 급제동 시 제동감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 25의7.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란 자동차의 주행 중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25의8. "제동력지원장치"란 급제동시 제동페달에 가하여지는 힘이나 속도를 감지하여 제동력을 최대로 증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26. "천연가스"라 함은 탄화수소가스와 증기의 혼합물로서 주로 메탄이 가스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용 연료를 말한다.
27. "천연가스용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를 말한다.
28. "천연가스연료장치"라 함은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와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29. 삭제 <2001. 4. 28.>
30. 삭제 <2001. 4. 28.>
31. "천연가스연료장치의 고압부분"이라 함은 압축천연가스용기부터 첫번째 압력조정기까지의 부분중 첫번째 압력조정기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3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어린이(13세 미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33.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34. "2층대형승합자동차"라 함은 운전자 및 승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차실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2층 구조로 하면서 위층에는 입석을 하지 아니하는 대형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5. "굴절버스"란 각각 독립적인 차실을 갖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여 굴절이 되는 자동차로서 승객이 차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연결부분이 쉽게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36. 삭제 <2014. 6. 10.>
37. "보조제동장치"란 주제동장치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장시간에 걸쳐 제동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리타더 및 배기제동장치 등을 말한다. 다만, 연동제동장치를 갖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초소형승용자동차(이하 "초소형승용자동차"라 한다), 초소형화물자동차(이하 "초소형화물자동차"라 한다) 및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연동제 동장치와 별도로 작동되는 주제동장치를 말한다.
38. "연동제동장치"란 초소형승용자동차 및 초소형화물자동차(이하 "초소형자동차"라 한다)와 이륜자동차의 모든 바퀴의 브레이크가 하나의 조종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제동장치를 말한다.
 39. "분할제동장치"란 초소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주제동장치 내의 둘 이상의 계통 중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계통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로서, 하나의 조종장치로 모든 바퀴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주제동장치를 말한다.
 40. "보행자머리모형"이란 보행자보호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성인머리모형 및 어린이머리모형을 말한다.
 41. "보행자다리모형"이란 보행자보호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상부다리모형 및 하부다리모형을 말한다.
 42. "보행자머리충격부위"란 횡단경계선 1,000밀리미터부터 1,700밀리미터까지와 좌·우 측면 기준선이 경계가 되는 어린이머리모형충격부위 및 횡단경계선 1,700밀리미터부터 2,100밀리미터와 좌·우 측면기준선이 경계가 되는 성인머리모형충격부위로 구성된 자동차 앞면 구조물 표면(창유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3. "보행자다리충격부위"란 보행자의 다리가 충격하는 자동차앞면에 설치된 범퍼시험영역을 말한다.
 44. "횡단경계선"이란 줄자의 한쪽 끝을 범퍼 앞면에서 수직한 지면에 놓고 다른 한쪽 끝을 자동차 앞면 구조물 표면에 놓은 상태로 후드와 범퍼를 따라 좌우로 움직일 때 앞면 구조물 표면에 발생하는 점점의 연장선을 말한다.
 45. "측면기준선"이란 직선자를 자동차의 너비방향면에 평행하고 지면에 수직하게 하여 자동차의 측면방향으로 45도 기울여서 자동차 측면표면과 접촉을 시킨 상태로 자동차의 측면을 따라 앞뒤로 움직일 때 직선자와 자동차구조물간의 가장 높은 점점의 연장선을 말한다.
 46. "범퍼모서리"란 자동차의 길이방향면과 60도의 각도를 이루는 수직면이 범퍼의 외부표면에 접촉하는 지점을 말한다.
 47. "범퍼시험영역"이란 양쪽 두개의 범퍼모서리에서 자동차 중심방향으로 자동차너비방향과 평행하게 66밀리미터 이동한 지점과 자동차 수직중단면이 교차하는 지점에 의하여 경계가 되는 점퍼의 앞면표면을 말한다.
 48. "범퍼하부기준선높이"란 직선자를 자동차길이방향면에 평행하고 지면에 수직하게 하여 직선자를 자동차길이방향 뒤쪽으로 25도 기울여 지면 및 범퍼표면과 접촉시킨 상태로 자동차의 앞면을 따라 좌우로 움직일 때 직선자와 범퍼간의 가장 낮은 점점의 연장선을 말한다.
 49. 삭제 (2011. 10. 6.)
 50.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 50의2. "저속전기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51. "전기회생제동장치"란 자동차를 감속시킬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52. "고전원전기장치"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거나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를 말한다.
 53.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

- 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54. "구동전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회전운동하는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55. "활선도체부"란 통상 사용상태에서 전기적으로 통전(通電)되는 도체(導體) 또는 도전성(導電性)부위를 말한다.
 56.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란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공기압의 저하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타이어 공기압의 상태를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57. "수륙양용(水陸兩用)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수상에서 항행할 수 있는 구조와 장치 등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8.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9. "연료전지"란 수소를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60.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말한다.
 61. "비상자동제동장치"란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62. "비상탈출구"란 비상시 승객이 자동차 바깥으로 탈출하는데 사용하는 천정 또는 바닥의 개구부를 말한다.
 63. "비상탈출장치"란 승강구, 비상문,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를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60호, 제2조제61호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 가.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공포한 날
나. 가 목 외의 적용차종: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일 : 2019.7.1.] 제2조제62호, 제2조제63호
- 제3조(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정비되어야 한다.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4조(길이·너비 및 높이)** ①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1. 17., 2017. 1. 9.>
1. 길이 : 13미터(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
 2. 너비 : 2.5미터(간접시계장치·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 등의 경우 이들 장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높이 : 4미터
-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를 측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공차상태일 것
 2. 직진상태에서 수평면에 있는 상태일 것
 3. 차체 밖에 부착하는 간접시계장치, 안테나, 밖으로 열리는 창,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환기장치 등의 바깥 돌출부분은 이를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일 것

4. 적재 물품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은 측정대상에서 제외할 것

제5조(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경주용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3. 3. 23., 2018. 12. 31.>

제6조(차량총중량등) ①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0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8.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축중 및 윤중은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은 600킬로그램을, 초소형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은 750킬로그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7. 11.>

제7조(중량분포) ①자동차의 조향바퀴의 윤중의 합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20퍼센트(3륜의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8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5. 12. 30.>

②견인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폴트레일러를 제외한다)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최대안전경사각도)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좌우로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고소작업·방송중계·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승차정원 10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공차상태에서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경우에는 30도)

2. 승차정원 11명 이상인 승합자동차: 적차상태에서 28도

[전문개정 2008. 12. 8.]

제9조(최소회전반경) ①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지름 5.3미터와 12.5미터의 동심원 사이를 회전하였을 때 그 차체가 각 동심원에 모두 접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 2. 15.>

[전문개정 1999. 6. 28.]

제10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지부분은 소음의 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2. 삭제 <1999. 2. 19.>

3. 무한궤도를 장착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무한궤도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삭제 <1999. 2. 19.>

제11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1997. 8. 25., 2009. 1. 23.>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삭제 <2011. 10. 6.>

3. 삭제 <1997. 8. 25.>

4. 삭제 <1997. 8. 25.>

②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등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09. 6. 18.>

③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조속기는 연료의 분사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하며, 봉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조작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 7. 21.>

④ 초소형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를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1.>

제12조(주행장치) ① 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2017. 1. 9.>

②자동차의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과도하게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③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바퀴 뒤쪽에는 흙받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④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피견인자동차로 한정한다)·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되는 휠은 제112조의1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브레이크라이닝 마모상태를 휠의 탈거(脫去)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 9., 2018. 7. 11.>

제12조의2(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복륜(複輪인)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 7. 11.>

②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소한 시속 40킬로미터부터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까지의 범위에서 작동될 것

2. 경고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점등되고 정상상태 시 소등될 것. 다만, 공유구역(1개 이상의 식별표시, 표시장치, 식별부호 또는 그 밖의 메시지를 표시하지만 동시에 표시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운전자가 낮에도 운전석에서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본조신설 2011. 3. 16.]

제13조(조종장치등) ①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호의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는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이하 "안전띠"라 한다)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 및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1997. 1. 17., 2003. 2. 25., 2010. 3. 29.>

1. 주시동장치·정지장치·가속제어장치 및 기타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변속장치·창닫이기·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안개제거장치·전조등·등화점등장치·비상경고신호등·방향지시등 및 경음기의 조작장치

4. 속도계·방향지시등·주행법·연료장치·원동기명각수·윤활유·제동경고등·충전장치 및 경제운전의 표시장치

②가속제어장치의 복귀장치는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할 때에 원동기의 가속제어장치를 가속위치에서 공회전위치로 복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변속장치의 조종레버(변속레버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는 변속단수별 조작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자동변속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7., 2005. 8. 10., 2009. 6. 18., 2010. 11. 10., 2018. 7. 11.>

1. 중립위치는 전진위치와 후진위치 사이에 있을 것
2. 조종레버가 조향기둥에 설치된 경우 조종레버의 조작방향은 중립위치에서 전진위치로 조작되는 방향이 시계방향일 것
3. 주차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위치에 가까운 끝부분에 있을 것. 다만, 순서대로 조작되지 아니하는 조종레버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하이브리드자동차
 - 나. 전기자동차
 - 다. 원동기의 구동이 모두 정지될 경우 변속기가 자동으로 중립위치로 변환되는 구조를 갖춘 자동차
 - 라. 주행하다가 정지하면 원동기의 시동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를 갖춘 자동차
5. 전진변속단수가 2단계 이상일 경우 매시 4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최고속변속단수에서의 제동효과를 최고속변속단수 외의 단수에서의 제동효과보다 작을 것
 - ④자동차에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조향기둥 좌우측에 위치한 방향지시등·비상점멸표시등·창닫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등의 레버식조종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 2017. 1. 9.>
 - ⑤자동차의 차실안에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장치의 작동여부 및 상태의 정상여부를 나타내 주는 표시장치(이하 "자동표시기"라 한다)가 자동표시기 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당해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자동차에 보조시동장치(전파등을 이용한 원격시동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크랭킹의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5. 7. 21.>
 - ⑦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변축 인접축에 제6조에 따른 축중을 초과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기재된 축별설계허용하중을 초과하는 적재하중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가변축을 하향시키고 상승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험로(險路) 탈출 등 일시적인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동조작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구동축 축별설계허용하중의 1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작동 중에 앞차축이 지면에서 들리지 않는 구조인 경우
 3. 자동차가 험로를 탈출한 후 매시 30킬로미터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으로 하강하여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인 경우

[시행일 : 2021. 1. 1.] 제13조

제14조(조향장치) ①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5., 2010. 11. 10.>

1.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시에 차대 및 차체등 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고, 갈라지거나 굵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으며,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2. 조향장치는 조작시에 운전자의 옷이나 장신구등에 걸리지 아니할 것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 구분에 따른 해당 속도로 반지름 50미터의 곡선에 접하여 주행할 때 자동차의 선회원(旋回圓)이 동일하거나 더 커지는 구조일 것

- 가. 승용자동차: 시속 50킬로미터
 나.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시속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
4. 자동차를 최고속도(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견인자동차의 최고속도를 말한다)까지 주행하는 동안 조향핸들이 비정상적으로 조작되거나 조향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진동되지 아니하고 직진 주행이 가능할 것. 다만, 제10호가목에 따른 조향장치에 의한 진동은 제외한다.
 5.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가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응력(應力)에 견딜 것
 6. 조향장치(피견인자동차를 조향하는 제어장치를 포함한다)는 자기장이나 전기장에 의하여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7. 조향장치의 결합구조를 조절하는 장치는 잠금장치에 의하여 고정되도록 할 것
 8. 조향바퀴는 뒷바퀴에만 있어서는 아니 될 것. 다만, 세미트레일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조향장치 중 기계적인 강성이 필요한 모든 관련 부품은 제동장치 등과 같은 필수부품과 동등한 안전특성으로 충분한 크기를 갖추어야 하고, 그 부품의 고장으로 자동차를 조종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품은 금속 또는 이와 동등한 특성을 갖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작동 중일 때에는 해당 부품에 심각한 변형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10. 조향장치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고장(기계적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고장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고장 시 조향장치에 의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구조인 경우
 - 나. 고장 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조향조종력이 증가되는 구조인 경우
 - 다.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고장 시 기계적인 표시기를 갖춘 구조인 경우
- ② 삭제 <2003. 2. 25.>
- ③조향핸들의 유격(조향바퀴가 움직이기 직전까지 조향핸들이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은 당해 자동차의 조향핸들지름의 12.5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 ④조향바퀴의 옆으로 미끄러짐이 1미터 주행에 좌우방향으로 각각 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각 바퀴의 정렬상태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제14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7. 11.>
1. 삭제 <2018. 7. 11.>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덩크형 화물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본조신설 2017. 1. 9.]
- [시행일] 제14조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 2019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2021년 7월 1일
- 제15조(제동장치)** ①자동차(소소형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주제동장치와 주차 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차제동장치"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4., 2009. 1. 23., 2011. 12.

23., 2014. 6. 10., 2018. 7. 11.)

1.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주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2. 주제동장치의 계통 중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고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의 다른 계통 등으로 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있고, 제동력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제동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제동액 저장장치에는 제동액에 대한 권장규격을 표시할 것
 4. 주제동장치에는 라이닝 등의 마모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차량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모든 바퀴로 구동할 수 있는 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축의 주제동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황색 경고등을 말한다)를 설치하거나 자동차의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6. 에너지저장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제동장치에는 2개(에너지 저장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자의 힘으로만 기계적으로 주제동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 구조의 경우는 1개) 이상의 독립된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각 에너지저장장치는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장치를 설치할 것
 7. 주차제동장치는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일 것
 8. 주차제동장치는 주행중에도 제동을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9.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출 것
 - 가. 각 계통별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나타내는 압력계는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 나. 2개 이상의 독립된 계통을 갖춘 공기식 주제동장치는 제동조종장치와 제동바퀴 사이에서 공기누설이 발생할 경우 누설된 공기를 대기중으로 배출시키는 구조일 것
 10.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은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주행중인 자동차를 급제동할 때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할 것
 11.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12.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 ② 초소형자동차에는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1.>
1. 주제동장치로 발조작식 분할제동장치 또는 발조작식 연동제동장치 및 보조제동장치를 갖출 것. 다만, 주차제동장치가 보조제동장치 성능에 적합할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보조제동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2.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주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3. 제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유압유체를 사용하는 마스터실린더를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액 저장장치를 갖출 것
 - 가. 덮개를 밀봉하여 제동액을 외부와 격리시키는 구조일 것
 - 나.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間隙)을 최대로 한 상태에서 새로운 라이닝이 완전히 마모될 때까지의 유체 소요량의 1.5배에 상당하는 저장장치 용량을 갖출 것
 - 다. 덮개를 열지 않고도 유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주제동장치에는 라이닝 등의 마모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5.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황색경고등을 말한다)를 설치하거나 자동차의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6. 주차제동장치에는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주행 중에도 제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초소형자동차에는 황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할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으면 꺼지고, 고장이 있으면 켜진 상태가 지속되도록 할 것
 8.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은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를 급제동할 때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10.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 ③피견인자동차(차량총중량이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제1항제1호·제4호(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제5호·제7호 및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3.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주행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가 체인·와이어로프 등 보조연결장치에 의하여 조절되고 연결봉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독립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 ④자동차(초소형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제동장치에는 제동액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이 부족할 경우 등 제동기능의 결함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 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경고장치에 사용되는 경고음 또는 경고등은 다른 경고장치의 경고음 또는 경고등과 구별이 될 수 있을 것. 다만, 주차제동장치의 표시장치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고장치의 경고등은 충분한 밝기를 갖춘 적색의 등화로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경고장치의 경고음은 운전자의 귀의 위치에서 측정할 때에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65데시벨 이상,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75데시벨 이상일 것. 다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7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 ⑤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세미트레일러형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성제동구조의 주제동장치(이하 "관성제동장치"라 한다) 또는 제7항의 기준에 적합한 전기식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9., 2011. 12. 23., 2014. 6. 10., 2018. 7. 11.>
1. 주행중에 사용하는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중에 사용하는 주차제동장치를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6. 10.>
 3.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관성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연결자동차의 급제동능력이 제1항제10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삭제 <2014. 6. 10.>
6. 삭제 <2014. 6. 10.>
7.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건인자동차와 피건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와 분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은 11도 30분의 경사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8. 관성제동장치의 구조는 별표 4의4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성제동장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 ⑥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캠핑용트레일러·피건인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8. 12. 8., 2012. 2. 15., 2018. 7. 11.>
 1.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황색경고등을 설치할 것
 2.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피건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건인자동차의 경우에는 피건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건인자동차의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황색경고등을 설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황색경고등은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한 때에 켜졌다가 고장이 없는 경우에는 꺼지고,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4. 피건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건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 ⑦전기식(제동력 전달계통이 전기식인 경우를 말한다)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피건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건인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6. 10., 2018. 7. 11.>
 1. 전원공급장치(발전기와 축전지를 말한다)는 피건인자동차의 전기식 주제동장치에 충분한 전류를 공급하는 용량을 갖출 것
 2. 제동장치의 전기회로는 과부하시에도 단락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2개 이상의 독립된 계통을 갖춘 주제동장치의 경우에는 하나의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계통으로 피건인자동차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동시킬 수 있을 것
 4. 전기식 주제동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제동작동회로는 여유부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인자동차의 제동등과 병렬로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 ⑧연결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4., 2018. 7. 11.>
 1.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건인자동차는 건인자동차와 피건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공기가 차단되는 구조일 것
 3. 건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피건인자동차의 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건인자동차와 피건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건인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피건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건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주제동장치의 계통 중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고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의 다른 계통 등으로 피건인자동차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정지시킬 수 있을 것
 - 나. 피건인자동차와 연결된 공기라인 중 하나의 공기라인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피건인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되거나 건인자동차에서 피건인자동차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동시킬 수 있을 것

- 다. 스프링제동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기압력의 손실로 인하여 스프링제동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될 때 피견인자동차도 자동적으로 제동될 것
- 4의2.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비상제동장치 또는 주차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동시에 연동하여 작동되는 구조일 것.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이 연결자동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단독으로 자동작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견인자동차와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된 상태에서의 주차제동능력은 피견인자동차의 공기식 제동장치와 연동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의 기계적인 작동만으로 주차제동이 가능할 것. 다만, 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의 기계적인 작동만으로 연결자동차의 주차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피견인자동차의 공기식 제동장치와 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연동하여 작동하게 할 수 있다.
- ⑨ 제동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점등되고, 제동력이 해제될 때까지 점등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적 제동에 의한 경우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보조제동장치에 의한 제동의 경우에는 감속도에 따라 점등되거나 점등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8. 1. 14., 2018. 7. 11.>
1. 운전자의 조작에 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
 2. 자동제어제동에 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 다만, 감속도가 매 제공초 0.7미터(0.9%) 미만인 경우 점등되지 아니할 수 있다.
-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제동신호장치 또는 전기회생제동장치(승용자동차에 한정한다)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보조제동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방향지시등은 다음 각 호의 작동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2018. 7. 11.>
1.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별표 5의2 제1호의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될 것
 2. 가속페달 해체에 의하여 감속도가 발생하는 전기회생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은 별표 5의2 제2호의 제동등 작동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될 것
- ⑪ 전기회생제동장치를 갖춘 승용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23., 2018. 7. 11.>
1. 전기회생제동장치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2.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주제동장치의 일부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는 것
 - 가.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전기회생제동장치가 독립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요구되는 제동력(이하 이 호에서 "요구제동력"이라 한다)을 전기회생제동력과 마찰제동력 간에 자동으로 보상하는 구조일 것
 - 나. 전기회생제동력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마찰제동력이 작동하여 1초 내에 해제 당시 요구제동력의 75퍼센트 이상 도달하는 구조일 것
 - 다. 주제동장치는 하나의 조종장치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제동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라. 주제동장치의 제동력은 동력 전달계통으로부터의 구동전동기 분리 또는 자동차의 변속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⑫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장착되는 브레이크호스와 브레이크라이닝은 각각 제 112조의2와 제112조의10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23., 2017. 1. 9., 2018. 7. 11.>

⑬ 자동차에는 별표 4의3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동력지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및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5., 2018. 7. 11.>

⑭ 제동력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승용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별표 4의5의 주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10., 2018. 7. 11.>

[전문개정 2003. 2. 25.]

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① 자동차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7. 11. 14., 2018. 7. 11.>

1. 4축 이상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4. 초소형자동차

②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4개 바퀴(앞 차축 및 뒤 차축의 좌우 각각 한 개의 바퀴를 말한다)에 개별적으로 회전제동력(braking torque)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방식을 갖춘 것
2. 주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항상 작동할 수 있을 것
 가. 운전자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킨 경우
 나.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다. 시동 시 자가 진단하는 경우
 라.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3.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또는 구동력 제어장치가 작동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작동될 것
4. 고장 발생 시 점등되는 경고등(警告燈)을 갖춘 것

[본조신설 2010. 11. 10.]

[시행일 : 2023. 1. 1.] 제15조의2 개정규정 중 차량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면서 길이가 11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20톤 이하인 화물·특수자동차

제15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7. 11.>

1. 삭제 <2018. 7. 11.>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동차

[본조신설 2017. 1. 9.]

[시행일] 제15조의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 2019년 1월 1일
- 나. 가목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2021년 7월 1일

제16조(완충장치) ① 자동차는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장치의 각부는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

야 한다.

제17조(연료장치) ①자동차의 연료탱크·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7., 1997. 8. 25.>

1. 연료장치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배기관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를 제외한다)
3.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를 제외한다)
4. 차실안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료탱크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②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1. 자동차의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수소농도는 평균 4%, 순간 최대 8%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차단밸브(내압용기의 연료공급 자동 차단장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후의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승객거주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 이하일 것
3. 차단밸브 이후의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승객거주 공간, 수하물 공간, 후드 하부 등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가 $2\pm 1\%$ 초과 시 적색경고등이 점등되고, $3\pm 1\%$ 초과 시 차단밸브가 작동할 것

제18조(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여 씌우고, 차체에 고정시킬 것
2. 차실안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절히 절연물질로 덮여 씌울 것
3.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차실안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덮여 씌울 것

제18조의2(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는 별표 5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0.]

제18조의3(구동축전지)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2. 설계된 범위를 초과하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물리적·화학적·전기적 및 열적 충격조건에서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09. 1. 23.]

제18조의4(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부전원 인입구는 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충전기는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출 것
3. 직류(DC) 60볼트 또는 교류(AC) 30볼트 이상의 고전압 부품은 별표 5 제4호가목에 따른 경고표시를 부착할 것
4. 누전차단기 및 휴즈 등 전원차단 기능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7. 1. 9.]

제19조(차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17. 11. 14.>

1.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차체의 가연성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자동차의 가장 뒤의 차축 중심에서 차체의 뒷부분 끝(범퍼 및 견인용 장치를 제외한다)까지의 수평거리("뒤 우우버행"을 말한다)는 가장 앞의 차축중심에서 가장 뒤의 차축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의 2분의 1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이하일 것

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센터차 축트레일러의 경우에는 4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②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고, 견인형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인 경우에는 차량총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 7. 21., 1999. 2. 19., 2006. 4. 14., 2008. 12. 8.>

③차량총중량이 8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의 공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 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차체 등의 구조물과의 간섭으로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 및 조향축간 거리가 2,100밀리미터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1. 4. 28., 2009. 6. 18., 2014. 6. 10.>

1.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뒷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뒷바퀴와의 간격을 400밀리미터 이내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 앞·뒷바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측면보호대의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측면보호대의 가장 윗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9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 가장 윗부분과 차체 바닥면과의 간격이 350밀리미터 이하일 경우는 제외한다.

4. 측면보호대 가장 바깥쪽 면은 차체의 가장 바깥쪽 면보다 안쪽에 위치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15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측면보호대의 뒷부분부터 최소한 250밀리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측면보호대의 가장 바깥쪽 면이 차체의 가장 바깥쪽 면부터 타이어의 가장 바깥쪽 면의 안쪽으로 30밀리미터까지에 해당하는 구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측면보호대 각각의 단면 높이는 50밀리미터 이상이고, 측면보호대 사이의 높이 간격은 3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6. 측면보호대에 1킬로뉴턴의 하중을 가할 때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측면보호대의 뒷부분부터 250밀리미터까지는 30밀리미터, 그 외 구간은 150밀리미터 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④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포장노면 위에서 공차상태로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할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목재·철재·기동 등과 같이 길고 분리할 수 없는 화물운송용 특수트레일러 및 후부안전판이 차량용도에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 4. 28., 2003. 2. 25., 2014. 6. 10.>

1. 후부안전판의 양 끝 부분은 뒷차축 중 가장 넓은 차축의 좌·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지면

과 접지되어 발생하는 타이어 부풀림양은 제외한다) 지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면 지점부터의 간격은 각각 100밀리미터 이내일 것

2.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내일 것
3.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
4. 좌·우 측면의 곡률반경은 2.5밀리미터 이상일 것
5. 지상부터 2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 후단부터 차량길이 방향의 안쪽으로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6. 화물 하역장치 등이 설치되어 해당 작동부로 인하여 후부안전판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화물 하역장치 등과 후부안전판 끝부분과의 간격은 각각 25밀리미터 이하일 것
 - 나. 분리된 후부안전판 각각의 면적은 최소 35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너비가 2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동차의 고압가스운송용기는 그 용기의 뒤쪽 끝(가스충전구에 안전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 장치의 뒤쪽 끝을 말한다)이 차체의 뒷쪽 안쪽으로 30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이 되어야 하며, 차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개정 2001. 4. 28., 2005. 8. 10.>

⑥ 차체의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자동차로서 기능상 부득이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2004. 12. 6.>

⑧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신설 1997. 8. 25.>

⑨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별표 5의3 제1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 25., 2008. 12. 8., 2014. 2. 21.>

⑩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정지표시장치(이하 "정지표시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 2. 21.>

⑪ 2층 전체 또는 일부분에 지붕이 없는 2층대형승합자동차(이하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라 한다)의 위층에는 승객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호판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10.>

1. 정면은 140센티미터 이상의 판넬을 설치할 것
2. 옆면은 110센티미터 이상, 뒷면은 120센티미터 이상의 판넬을 설치하거나 옆면과 뒷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판넬과 다음 각 목에 적합한 보호봉을 함께 설치할 것
 - 가. 보호봉(비상구 부분은 보호봉의 일부로 본다)은 차체에 견고하게 부착된 구조이고 보호봉의 단면 크기 두께는 2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일 것
 - 나. 인접한 판넬 또는 보호봉과의 간격은 20센티미터 이내의 구조일 것

제20조(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견인할 때에 해당 자동차 중량의 2분의 1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고,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견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연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연결장치는 등록번호판을 가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장치가 공구의 사용 없이 쉽게 분리되거나 등록번호판이 가리지 아니하도록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등화장치가 연동될 수 있는 전기 커넥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주행 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의 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주행 중 연결장치가 분리될 경우에 연결봉 등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구조의 보조연결장치(체인·와이어로프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연결장치의 설치 및 강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0.]

제21조(후드걸쇠장치) 자동차의 후드에는 견고한 후드걸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앞 방향으로 개폐되는 후드가 운행 중에 열릴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구조의 자동차는 2차 잠금 또는 2개소 잠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9.]

제22조(도난방지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춘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조향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2. 자동차의 변속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3. 자동차 변속장치의 위치조작을 억제하는 기능
4. 자동차 차축 또는 바퀴에 제동력이 작동하여 자동차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기능
5. 전자적으로 동력원의 시동을 방지하는 기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이 갖추어야 하는 세부기능 및 그에 대한 확인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7. 1. 9.]

제23조(승차장치) ① 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9.>

1. 승강구 계단 부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시설을 갖추는 것
2.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하는 계단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시설을 갖추는 것
3.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하는 계단의 각 수직면은 막혀있을 것
4.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앞면 창유리 방향으로 설치되는 1열 좌석 앞부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시설을 갖추는 것
5. 승차장치에 손잡이대 및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7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운전자 및 승객이 타는 자동차는 외부와 차단된 차실(이하 "차실"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방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용도상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3. 3. 23., 2018. 7. 11.>

③ 자동차의 차실에는 조명시설 및 외기와 내기를 순환시키는 환기시설(초소형자동차, 컨버터블 및 무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의 냉각수(난방용수를 제외한다)·정류기·변환기·변압기 등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치를 차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합자동차의 차실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7. 8. 25., 2017. 1. 9., 2018. 7. 11.>

④ 삭제 <2017. 1. 9.>

⑤ 전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에는 위층 탑승객의 착석여부를 운전석에서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는 영상장치와 안내방송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10.>

[시행일 : 2019.7.1.] 제23조

제24조(운전자의 좌석) ① 운전자의 좌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이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고 승객 또는 화물 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하는 구조일 것
 2. 운전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종장치의 원활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
 3. 운전자의 좌석과 조향핸들의 중심과의 과도한 편차로 인하여 운전조작에 불편이 없을 것
- ② 운전자의 좌석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5의32 제1호에 따른 50퍼센트 성인남자 인체모형이 착석 가능할 것
 2.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일 것
- ③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운전자의 좌석은 별표 5의2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1. 14.]

[시행일 : 2019. 7. 1.] 제24조제2항제2호 중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등) ① 자동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객좌석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구급자동차·소방자동차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좌석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2. 8. 31., 2013. 3. 23., 2017. 1. 9., 2017. 11. 14., 2019. 3. 21.>

1.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 가능할 것
2.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일 것
3.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65센티미터(승합자동차에 설치되는 마주보는 좌석등받이의 앞면 간의 거리는 130센티미터) 이상일 것

②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 규격 및 좌석간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3. 21.>

1. 좌석 규격: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도록 하되, 좌석 등받이(머리지지대를 포함한다)의 높이는 71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좌석간 거리: 앞좌석등받이의 뒷면으로부터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까지의 거리는 별표 5의 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일 것

③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객좌석의 높이는 40센티미터 이상 5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원동기부분 및 바퀴부분의 좌석등 그 구조상 40센티미터 이상 50센티미터 이하로 좌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의 좌석을 제외한다. <개정 2012. 8. 31., 2019. 3. 21.>

④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열좌석(운전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탈부착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중별 구분이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 8. 10.>

⑤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에는 옆면을 향한 좌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신설 2014. 6. 10.>

[제목개정 2019. 3. 21.]

[시행일 : 2020. 1. 1.] 제25조

제25조의2(접이식좌석) ①통로에 설치하는 접이식좌석은 3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내원용 접이식좌석은 3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어린이승용 승합자동차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6. 10.>

[본조신설 1999. 2. 19.]

제26조(머리지지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초소형화물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4.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전문개정 2010. 3. 29.]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8. 10., 2008. 3. 14., 2011. 12. 23., 2013. 3. 23.>

1. 환자수송용 좌석 또는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3. 삭제 <2011. 12. 23.>

②승용자동차의 모든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에는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 7. 21., 2010. 3. 29., 2011. 12. 23.>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띠는 제112조의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3.>

④ 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좌석에 착석한 운전자 또는 승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하거나 주행할 경우 운전자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별표 5의24의 기준에 따른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접이식 좌석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좌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4., 2018. 7. 11.>

1.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특수자동차: 모든 좌석

2.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운전자 및 운전자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⑤ 삭제 <2008. 1. 14.>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1997. 8. 25.>

[제목개정 1997. 1. 17.]

[시행일 : 2022. 9. 1.] 제27조제4항 개정규정 중 탈착식 뒷좌석과 상하 유동식 좌석이 설치된 열의 좌석

[시행일 : 2019. 9. 1.] 제27조

제27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좌석이 1열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8., 2018. 7. 11.>

1.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2곳 이상의 좌석에 설치하되, 최소한 1곳은 제2열 좌석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른 도구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 여부 및 설치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부부착구 및 부착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자동차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위로 30도의 방향에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부부착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착구를 통하여 차실 안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하부의 부착장치는 착석기준점으로부터 뒤쪽으로 120밀리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좌석부착장치가 제1열에 설치되고 그 전면에 에어백이 장착된 경우에는 에어백 작동을 중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별표 5의4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상부부착구 1개와 하부부착구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의 경우에는 상부부착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상부부착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 14.]

제28조(입석) ① 승합자동차의 입석 공간은 별표 5의29에 따른 통로 측정장치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7. 1. 9.>

② 1인의 입석 면적은 별표 5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9.>

③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별표 5의27의 기준에 적합한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9.>

④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에는 입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4. 6. 10., 2017. 1. 9.>

[시행일 : 2019.7.1.] 제28조

제29조(승강구) ① 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8. 25., 2008. 12. 8., 2009. 6. 18., 2011. 8. 31., 2014. 6. 10., 2017. 1. 9.>

1.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별표 5의30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승강구를 열고 바로 탑승하도록 좌석이 설치된 구조의 승강구는 제외한다)를 설치할 것
2. 삭제 <2009. 6. 18.>
3.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승하차의 편의를 위한 별표 5의27의 기준에 적합한 승하차용손잡이를 설치할 것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로 경우 승강구 유효너비(여닫이식 승강구에 보조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보조발판 바로 위 발판 윗면의 유효

- 너비)의 80퍼센트 이상, 세로의 경우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 나.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각 단(제1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판은 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다.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 라.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 작동 시 어린이 등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 마.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② 삭제 <2017. 1. 9.>

③ 삭제 <2017. 1. 9.>

④ 중형승합자동차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승강구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18.>

1. 모든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그 조작장치를 차실 내에 설치할 것
2. 모든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잠김상태에서 바깥쪽 문걸쇠플립장치에 의하여 승강구가 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옆면 뒤쪽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옆면 뒤쪽 승강구에 승강구의 잠금장치와 연동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동하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잠김상태에서 안쪽 문걸쇠플립장치에 의하여 승강구가 열리지 아니할 것
 - 나. 잠금장치의 조작장치와 안쪽 문걸쇠플립장치는 구별될 것
4. 뒷면 승강구에 안쪽 문걸쇠플립장치를 설치한 경우 잠금장치의 조작장치는 안쪽 문걸쇠플립장치와 구별될 것

[시행일 : 2019.7.1.] 제29조

제30조(비상탈출장치)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별표 5의31에 적합한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 9.]

[시행일 : 2019.7.1.] 제30조

제31조(통로)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별표 5의29에 따른 통로 측정장치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승강구를 열고 바로 탑승하도록 좌석이 설치된 구조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 1. 9.]

[시행일 : 2019.7.1.] 제31조

제32조(물품적재장치) ①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2001. 4. 28., 2003. 2. 25., 2005. 8. 10., 2008. 3. 14., 2008. 12. 8., 2013. 3. 23., 2018. 7. 11., 2018. 12. 31.>

1. 일반형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은 위쪽이 개방된 구조일 것
2.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물품적하구는 뒷쪽 또는 옆쪽으로 하되, 문은 좌우·상하로 열리는 구조이거나 미닫이식으로 할 것
 - 나.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는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 또는 최대적재량의 50퍼

센트의 하중을 가할 때 300밀리미터 이상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격벽으로 폐쇄할 것. 다만, 통기구 등 제작공정상 불가피한 부분 및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격벽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과 뒷면벽 또는 뒷문은 차체와 동등한 성능의 재질로 하고 창유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을 또는 차체에 2개 이상의 보호봉을 용접한 옆면벽과 보호봉을 설치한 뒷면벽 또는 뒷문의 경우에는 창유리를 설치할 수 있다.

라.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3.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에 필요한 구조 또는 장치를 한 자동차로서 다른 목적에 사용이 곤란한 탱크로리·살수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류·가스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재용량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초소형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최대적재량은 100킬로그램 이상일 것

나. 바닥면이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이고, 길이는 윤간거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기재된 윤간거리를 말하며, 전륜 또는 후륜 중 큰 값을 적용한다)의 1.4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물품적재장치 공간은 적재함의 길이×너비≥차량의 길이×너비×0.3을 충족할 것

라. 한 번의 길이가 60센티미터인 정육면체를 실을 수 있을 것

②사체·독극물·고압가스·화약류 기타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차체의부에서 적재물품을 적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운행중 적재물의 탈락의 우려가 있는 청소용 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덮개등을 설치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33조(가스운송장치) 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자동차에 설치하는 가스운송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용기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2. 가스용기는 누출된 가스 등이 차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거나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밸브주변이 견고한 재질로 밀폐되어 있고, 충격 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 밖으로부터 공기가 통하는 곳에 설치할 것.

3.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필요한 곳에 보호장치를 할 것

4.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의 발열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열장치를 할 것

5. 도관은 강관·동관 또는 내유성고무관으로 할 것

6. 양끝이 고정된 도관(내유성고무관을 제외한다)은 완곡된 형태로 최소한 1미터마다 차체에 고정시킬 것

7. 고압부분의 도관은 가스용기 충전압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8. 가스충전밸브는 충전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중간차단밸브를 작동하는 조작장치(시동장치로 작동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운전자가 조작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9.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 등은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300밀리미터 이상, 차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다만, 강도가 강재의 표준규격 41(SS41) 이상이고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인 강판 또는 형강으로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 등을 보호한 경우에는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 차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10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0.]

제34조(창유리 등) ① 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 또는 유리·플라스틱 조합유리로, 그 밖의 창유리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플라스틱유리 또는 유리·플라스틱 조합유리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의 앞면 외의 창유리와 피견인자동차의 창유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29., 2018. 12. 31.>

② 삭제 <2010. 3. 29.>

③ 삭제 <2010. 3. 29.>

④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창유리·선루프 또는 격실문(이하 "창유리등"이라 한다)이 전동식장치에 의해 닫혀지는 창유리등의 경우에는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닫히는 창유리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5. 8. 10., 2008. 12. 8., 2014. 6. 10.>

1.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 또는 라디오 등 편의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태(기계식 외의 시동장치로서 위와 동등한 상태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닫히는 경우
2. 자동차로부터 전원공급이 없이 완력에 의하여 닫히는 경우
3. 자동차 외부에서 창유리등을 자동으로 닫을 수 있는 장치(작동버튼을 계속 누르는 등 연속 작동이 있어야 닫힘이 완료되는 것에 한한다)를 작동하여 닫히는 경우
4. 시동장치의 열쇠를 원동기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자동차 앞문(조수석 쪽의 앞문을 포함한다)을 열 때까지 닫히는 경우
5. 창유리등이 4밀리미터 이하로 열린 상태에서 닫히는 경우
6. 창문틀이 없는 문의 경우 창유리가 12밀리미터 이하로 열려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의 문을 닫을 때 자동으로 닫히는 경우
7. 원격조종장치에 의하여 창유리등을 닫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와 원격조종장치간의 거리가 11미터(장애물이 있는 경우 6미터) 이하에서 원격조종장치를 연속적으로 작동하여 닫히는 경우
8. 운전석 창유리 및 선루프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1회의 조작으로 닫히는 경우
 - 가.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는 경우
 - 나. 1열 승강구가 승차인이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열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서 벗어나거나 제거된 경우(기계식 외의 시동장치로서 위와 동등한 조건의 경우를 포함한다)

⑤ 창유리등이 닫힐 때 창유리등의 뒷면에 지름 4밀리미터부터 200밀리미터까지의 반강체원통(탄성계수가 밀리미터당 1킬로그램인 것을 말한다)이 닿거나 1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9. 2. 19., 2005. 8. 10., 2014. 6. 10.>

1. 창유리등이 닫히기 시작하기 전의 위치로 돌아갈 것
2. 창유리등이 반강체원통에 닿거나 하중을 가한 위치로부터 50밀리미터이상 열릴 것
3. 창유리등이 200밀리미터이상 열릴 것
4. 사선방향의 여닫이 방식으로 열리는 기능만 갖춘 선루프의 경우에는 최대 개방 가능한 상태로 열릴 것

제35조(소음방지장치)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는 「소음·진동관리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5., 2005. 8. 10., 2008. 12. 31., 2010. 6. 30.>

제36조(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자동차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10., 2010. 3. 29.>

제37조(배기관) ① 자동차 배기관의 열림방향은 자동차의 길이방향에 대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45도를 초과해 열려 있어서는 안 되며, 배기관의 끝은 차체 외측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삭제 <2018. 12. 31.>

③ 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전조등)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전방을 비출 수 있는 주행빔 전조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좌·우에 각각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3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5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마주오는 자동차 운전자의 눈부심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환빔 전조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4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6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 전조등의 주행빔과 변환빔이 다양한 환경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변환되는 적응형 전조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적응형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5에 적합할 것

④ 주변환빔 전조등의 광속(光束)이 2천루멘을 초과하는 전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 닙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1.>

1. 매시 1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작동될 것

2. 전조등 닙이기 작동 후 광도는 최초 광도값의 70퍼센트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4. 6. 10.]

제38조의2(안개등)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일 것

3. 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6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7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7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8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0.]

제38조의3(승하차보조등) 자동차의 외부에 별표 6의30의 기준에 적합한 승하차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7. 11.]

제38조의4(주간주행등)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주간주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8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9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0.]

제38조의5(코너링조명등) 자동차의 앞면 또는 옆면의 앞쪽에 코너링조명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9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4. 6. 10.]

제39조(후퇴등) 자동차(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다만,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상인 자동차(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자동차 측면 좌·우에 각각 1개 또는 2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0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0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0.]

제39조의2(옆면보조등)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6의31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7. 11.]

제40조(차폭등) 자동차(너비 160센티미터 이상인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있다.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1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1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0.]

제40조의2(끝단표시등) 자동차 너비가 21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뒷면의 경우 일반형 화물자동차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로서 적재함 위쪽이 개방된 구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자동차 너비가 180센티미터 이상 210센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끝단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 및 뒷면 좌·우에 각각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앞면의 등광색은 백색, 뒷면의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2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4. 6. 10.]

제40조의3(주차등) 자동차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하, 너비가 200센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주차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3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11.]

제41조(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番號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등광색은 백색일 것
2. 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輝度)기준은 별표 6의13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2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번호등은 등록번호판을 잘 비추는 구조일 것

[전문개정 2014. 6. 10.]

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끝단표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는 좌·우에 각각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승합자동차

나.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4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3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0.]

제43조(제동등)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5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4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와 차체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개방형 적재함이 설치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 7. 11.>

1.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 상에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차체 중심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쪽에 대칭으로 2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6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4. 6. 10.]

제44조(방향지시등) 자동차의 앞면·뒷면 및 옆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자동차 앞면·뒷면 및 옆면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는 2개의 뒷면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호박색일 것
3.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7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5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0.]

제44조의2(옆면표시등) 길이 6미터 이상인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등광색은 호박색(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2.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8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6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0.]

제45조(비상점멸표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은 별표 6의19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7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0.]

제45조의2(후방추돌경고등) 후행하는 자동차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방추돌경고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후방추돌경고신호의 발생과 동시에 후방추돌경고등이 작동될 것
2. 후방추돌경고등의 작동기준은 별표 6의20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4. 6. 10.]

제46조(균용화 장치) ①최대 적재량 8톤 이상 9톤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에는 핀틀후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28., 2011. 12. 23.,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핀틀후크의 규격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5. 7. 21., 1999. 6. 28., 2008. 3. 14., 2013. 3. 23.>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5., 2003. 2. 25.>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끝단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및 옆면표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5., 2014. 6. 10.>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5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6. 10., 2014. 12. 31., 2018. 7. 11.>

1. 승합자동차에 목적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뒷바퀴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

치하는 경우

가. 백색의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삭제 <2018. 7. 11.>

4.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작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운행 중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① 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08. 12. 8.>

③ 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광원은 별표 6의2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 25., 2008. 12. 8., 2009. 6. 18., 2014. 6. 10., 2018. 7. 11.>

④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 25., 1999. 2. 19., 1999. 6. 28., 2008. 12. 8.>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나. 가목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다.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라. 다목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6.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⑤ 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기준은 별표 6의22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10.>

제49조(후부반사기 등)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있다.

2. 반사광은 적색일 것

3. 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3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8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피견인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반사광은 적색일 것

3.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4에 적합할 것
 - ③ 피견인자동차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반사광은 백색 또는 무색일 것
 3. 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5에 적합할 것
 - ④ 피견인자동차와 자동차 길이 600센티미터 이상인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동차에 옆면반사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옆면반사기의 색상은 호박색(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2. 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6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9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⑥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6의28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삭제 <2018. 7. 11.>
 2. 삭제 <2018. 7. 11.>
 3. 삭제 <2018. 7. 11.>
 4. 삭제 <2018. 7. 11.>
 - ⑦ 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에는 제112조의13의 기준에 적합한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9.>
 - ⑧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미완성자동차·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미완성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옆면(자동차의 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뒷면(자동차 너비가 2.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띠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도 반사띠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8. 12. 31.>
 1. 반사띠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색상일 것
 - 가. 앞면: 백색
 - 나. 옆면: 황색 또는 백색
 - 다. 뒷면: 황색 또는 적색
 2. 반사띠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은 별표 32의2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4. 6. 10.]
[시행일 : 2019.7.1.] 제49조
- 제50조(간접시계장치)** ①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9., 2018. 7. 11.>
1.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는 별표 5의6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별표 5의7 시계범위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의 경우 간접시계장치의 설치 및 시계범위는 별표 50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는 별표 5의6과 별표 5의8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별표 5의7 시계범위에 적합할 것
- ②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원동기가 운전석으로부터 앞쪽에 위치해 있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9.>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한다)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14., 2011. 8. 31., 2014. 2. 21., 2017. 1. 9.>

④ 제1항에 따른 간접시계장치에 추가로 평균곡률반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반사면이 1만 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광각 실외후사경 또는 영상장치를 설치하여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8. 31., 2017. 1. 9.>

⑤ 자동차에는 제1항에 따른 간접시계장치를 보조하는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는 별표 5의2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24., 2017. 1. 9.>

[제목개정 2017. 1. 9.]

제51조(창댕이기 장치등) ①자동차의 앞면창유리(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앞면창유리는 제외한다)에는 시야확보를 위한 자동식창댕이기·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뒷면 및 기타 창유리의 경우에도 창댕이기·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 또는 안개제거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7., 2014. 6. 10.>

②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창유리에 설치하는 창댕이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17., 2018. 7. 11.>

1. 작동주기의 종류는 2가지 이상일 것
 2. 최저작동주기는 매분당 20회 이상이고,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는 매분당 45회 이상일 것
 3. 최고작동주기와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의 차이는 매분당 15회 이상일 것
 4. 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
- ③ 초소형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 설치하는 창댕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1.>

1. 분당 40회 이상 작동할 것
2. 작동 정지 시 최초의 위치로 자동으로 돌아오는 구조일 것

제52조 삭제 <2009. 6. 18.>

제53조(경음기) 자동차의 경음기(사이렌 및 종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5., 2001. 4. 28., 2005. 8. 10., 2008. 12. 31., 2010. 6. 30., 2017. 11. 14.>

1.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소리를 내는 것일 것
2. 경적음의 크기는 일정하여야 하며, 차체전방에서 2미터 떨어진 지상높이 1.2±0.05미터가 되는 지점에서 측정한 값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음의 최소크기는 90데시벨(C) 이상일 것
 - 나. 음의 최대크기는 「소음·진동관리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 ①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장치를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후방 끝 중심으로부터 좌우 1,000밀리미터, 후방 300밀리미터부터 2,000밀리미터까지의 영역에 설치된 직경 30밀리미터·높이 5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전부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후진시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3.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2.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및 경형·소형의 화물·특수자동차는 60데시벨(A) 이상 85데시벨(A) 이하일 것
 - 나. 가목 외의 자동차는 65데시벨(A) 이상 90데시벨(A) 이하일 것
 3. 경고음의 음색은 1/3옥타브 중심주파수대역이 500헤르츠 이상 4,000헤르츠 이하인 구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낼 것

[전문개정 2018. 7. 11.]

[시행일 : 2019.7.1.] 제53조의2

제53조의3(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동력 발생장치가 전동기인 자동차(이하 "저소음자동차"라 한다)에는 별표 6의33의 기준에 따른 경고음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11.]

[시행일 : 2020. 7. 1.] 제53조의3

제53조의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속을 포함한다)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를 발생장치와 표시등(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 또는 제48조 제4항에 따른 표시등을 말한다)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제1호에 따른 경고를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되면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속을 포함한다)을 누르거나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다시 시동(제13조제6항에 따른 보조시동장치에 의한 시동은 제외한다)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제1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 가.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경보음 또는 음성 메시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 나. 경고음은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 데시벨(A)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19. 3. 21.]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 자동차에는 제110조에 따른 속도계와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의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② 다음 각 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1995. 12. 30., 1997. 1. 17., 2003. 2. 25., 2005. 8. 10., 2010. 3. 29., 2012. 2. 15., 2017. 11. 14.>

1. 승합자동차(제2조제32호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2.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는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 저속전자자동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설 1995. 7. 21., 1995. 12. 30., 2003. 2. 25., 2005. 8. 10., 2010. 3. 29.>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110킬로미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90킬로미터
3. 제2항제4호에 따른 저속전자자동차: 매시 60킬로미터
- ④ 삭제 <2012. 2. 15.>

[시행일 : 2019. 11. 15.] 제54조

제55조 삭제 <2001. 4. 28.>

제56조(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범위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기준은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2. 21.]

제56조의2(사고기록장치)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0.15초 이내에 진행방향의 속도 변화 누계가 시속 8킬로미터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측면 방향의 속도 변화가 기록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측면방향 속도 변화 누계가 0.15초 이내에 시속 8킬로미터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에어백 또는 좌석안전띠 프리로딩 장치 등 비가역안전장치가 전개되는 경우

②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3.8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에는 별표 5의25에 따른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에 적합하게 장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21.]

제57조(소화설비) ① 자동차에는 에이·비·씨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차정원 11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10., 2006. 4. 14., 2006. 10. 26., 2008. 1. 14., 2008. 12. 31., 2017. 1. 9.>

1.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2.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 가.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 나.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 다. 승차정원 3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
 - 가. 중형: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 나. 대형: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 제3호나목중 이동탱크저장소란 및 비고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 ②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좌석 부근에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9.>

[전문개정 2003. 2. 25.]

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7., 2005. 8. 10., 2006. 5. 30., 2012. 8. 31., 2014. 6. 10., 2017. 11. 14.>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이상 2천5백칸델라이하일 것
 - 나. 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구분	등광색
(가)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적색 또는 청색
(나)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다)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라)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마) 소방용 자동차	
(가) 전신·전화의 수리공사용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황색
(나) 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 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에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라)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마)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바) 기타자동차	
구급차·혈액 공급차량	녹색

2. 사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으로부터 2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C) 이상 120데시벨(C) 이하일 것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5. 7. 21., 1997. 1. 17., 2005. 8. 10.>

1. 경광등의 광도는 제1항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일 것
 [제목개정 2017. 11. 14.]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59조(길이·너비·높이) 이륜자동차는 축차를 제외한 공차상태에서 길이 2.5미터(대형의 경우에는 4미터), 너비 2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2. 25., 2014. 12. 31.>

제60조(차량총중량) 이륜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일반형 및 특수형의 경우에는 600킬로그램, 기타형의 경우에는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8., 2014. 12. 31.>

제61조(중량분포) 이륜자동차의 조향바퀴에 작용하는 하중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18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62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①이륜자동차의 접지부분은 소음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뒷차축에 설치하는 공기압타이어의 접지압력은 타이어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타이어 접지부분의 너비가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2017. 1. 9.>

제63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8., 2018. 12. 31.>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것
2. 차량총중량 100킬로그램당 출력이 1마력(PS)이상일 것. 다만,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최고출력은 20마력(PS) 이하일 것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12. 8.>

1. 정지상태에서 최초 100미터 지점까지의 도달시간이 다음 계산식을 만족할 것

$$t \leq 10 + 4G$$
 t : 정지상태에서 최초 100미터 지점까지의 도달시간(초)
 G : 차량총중량(톤)
2. 20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 경사로에서 정지상태에서 위 방향으로 주행시 소요시간이 다음 계산식을 만족할 것

$$t1 \geq t2 - t1$$
 t1 : 원점에서 10m 표시점까지 소요시간(초)
 t2 : 원점에서 20m 표시점까지 소요시간(초)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구동축의 안쪽바퀴와 바깥쪽바퀴의 회전 차이를 만들어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전달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 12. 8.>

제63조의2(원동기 출력) ① 이륜자동차 원동기의 출력 및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내연기관
 - 가. 최고출력 및 최대토크
 - 1)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10퍼센트
 - 2) 최고출력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퍼센트
 - 나. 회전수: 해당 회전수의 ±1.5퍼센트
2. 구동전동기

가. 최고출력

- 1)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10퍼센트
- 2) 최고출력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구동전동기의 부분 출력 및 다목에 따른 최고 30분 출력은 제외한다): 해당 출력의 -5퍼센트
다. 최고 30분 출력(30분 동안 일정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동전동기의 최고 출력): -10퍼센트

라. 회전수: 해당 회전수의 -5퍼센트

②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및 구동전동기의 회전수 오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원동기: 최고 회전수의 ± 1.5 퍼센트
- 2. 구동전동기: 최고 회전수의 ± 2 퍼센트

[본조신설 2012. 2. 15.]

[제목개정 2018. 12. 31.]

제64조(주행장치) ① 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9.>

② 이륜자동차 타이어는 타이어의 제작자가 도로주행용으로 적합하게 제작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2. 8.>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주행 안정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 12. 8., 2010. 11. 10.>

- 1. 최고속도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속도에서 가속제어장치 작용력을 제거한 상태로 자동차의 앞면 내측 모서리가 반경 12미터인 원에 접하여 선회할 때 안쪽바퀴가 시험노면에서부터 동시에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것
- 2. 20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의 경사로에서 정지상태에서 위 방향으로 급가속 시 앞바퀴가 동시에 시험노면에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것
- 3. 최고속도에서 가속제어장치 작용력을 제거한 상태로 진입하여 별표 5의10의 경로를 따라 주행 시 안쪽바퀴가 시험노면에서부터 동시에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경로 이탈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

제65조(조종장치) ① 이륜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장치는 차량중심선에서부터 좌우 각각 60센티미터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 1. 시동장치, 가속제어장치, 변속장치 및 그 밖에 원동기의 조작장치
-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 3. 등화점등장치, 경음기, 방향지시등의 조작장치

②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0.>

③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1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장치의 자동표시기가 자동표시기 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1. 10.>

[전문개정 2008. 12. 8.]

제66조(조향장치)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각 구성부품은 조작 시에 차대 및 차체 등 이륜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4. 6. 10.>

- 제67조(제동장치)** ① 이륜자동차(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제동장치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1. 10., 2011. 12. 23., 2014. 6. 10., 2018. 12. 31.>
1. 주제동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향장치를 양손으로 잡은 채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보조제동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향장치를 적어도 한손으로 잡은 채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주차제동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조종장치가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와 분리되어야 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로서 18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 경사로부터 적차상태의 이륜자동차를 정지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 이륜형 이륜자동차 및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제동장치를 갖추는 것.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가 별표 5의13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한 경우 측차의 제동장치는 본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 가. 앞바퀴와 뒷바퀴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주제동장치를 갖추는 것
 - 나. 앞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와 뒷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분할제동장치를 갖추는 것
 5.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제동장치를 갖춘 구조일 것
 - 가.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삼륜형 이륜자동차는 주차제동장치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주제동장치를 갖추는 것
 - 1) 앞바퀴와 뒷바퀴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주제동장치
 - 2) 분할제동장치
 - 3) 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
 - 나. 가목 외의 삼륜형 이륜자동차는 주차제동장치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발조작식(장애인용의 경우에는 발조작식 외에 다른 형태의 조작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주제동장치를 갖추는 것
 - 1) 분할제동장치
 - 2) 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
 6. 제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유압유체를 사용하는 마스터실린더를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액 저장장치를 갖추는 것
 - 가. 덮개를 갖추고 밀봉하여 제동액을 외부와 격리시키는 구조일 것
 - 나.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을 최대로 한 상태에서 새 라이닝이 완전히 마모될 때까지의 유체소요량의 1.5배에 상당하는 저장장치 용량을 갖추는 것
 - 다. 덮개를 열지 아니하여도 유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모든 경고장치의 경고등은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구조일 것
 8. 분할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에는 직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할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으면 꺼지고, 고장이 있으면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 8의2. 배기량 125시시 초과 또는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초과 이륜형 이륜자동차에는 바퀴잡 김방직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할 것
 9. 바퀴잡김방직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에는 황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할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으면 꺼지고, 고장이 있으면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 10. 브레이크는 자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장치에 의하여 라이닝 마모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11. 브레이크를 분해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라이닝의 마모상태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장치에 의하여 라이닝의 마모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12.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의13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할 것
-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0.>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 별표 5의13의 제동능력 기준 중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시행일 : 2020. 1. 1.] 제67조제1항제8호의2

제68조(완충장치) 제16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완충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9조(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① 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는 운행중 진동등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료장치 및 그 구성부품은 별표 5의1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3.>

② 이륜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여있어야 한다.

제70조(차체) ① 이륜자동차의 차체(타이어를 포함한다)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차체의 외부로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금지 외형의 세부적 기준 및 유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2. 23., 2013. 3. 23.>

② 이륜자동차에는 사람 또는 화물 등을 운송하기 위한 견인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8.]

제71조(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① 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8., 2011. 12. 23.>

- 1. 운전자의 좌석과 기타의 좌석에는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 것
- 2. 운전자 좌석 외의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 승차인의 이탈방지에 필요한 손잡이, 발걸이 또는 그 밖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손잡이는 별표 5의16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② 이륜자동차의 적재함 또는 그 밖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9.>

1.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 뒷면에 최대적재량을 표시할 것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물품적재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삭제 <2010. 3. 29.>

제72조(방풍장치) 이륜자동차에 방풍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행중 진동·충격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아니할 것

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제73조(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허용기준)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배기관) 이륜자동차의 배기관은 적재물등을 발화시키거나 이륜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75조(전조등) 이륜자동차(측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별표 5의17의 기준에 적합한 주행빔 전조등과 별표 5의18의 기준에 적합한 변환빔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7. 11.]

[시행일 : 2019.7.1.] 제75조

제75조의2(주간주행등)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3의 기준에 적합한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7. 11.]

[시행일 : 2019.7.1.] 제75조의2

제75조의3(안개등) ①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4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1.>

②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5의 기준에 적합한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1.>

[본조신설 2012. 2. 15.]

[시행일 : 2019.7.1.] 제75조의3

제76조(번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36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7. 11.]

[시행일 : 2019.7.1.] 제76조

제77조(후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19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삭제 <2018. 7. 11.>

2. 삭제 <2018. 7. 11.>

3. 삭제 <2018. 7. 11.>

4. 삭제 <2018. 7. 11.>

[전문개정 2012. 2. 15.]

[시행일 : 2019.7.1.] 제77조

제77조의2(차폭등) 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별표 5의20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7. 11.]

[시행일 : 2019.7.1.] 제77조의2

제78조(제동등) ①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21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별표 5의21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의 경우에는 제동조작을 할 때에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3.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4.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5. 2개 이하일 것

②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뒷면에 별표 5의21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 7. 11.>

[전문개정 2012. 2. 15.]

[시행일 : 2019.7.1.] 제78조

제79조(방향지시등)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22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7. 11.]

[시행일 : 2019.7.1.] 제79조

제79조의2(비상점멸표시등) ①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45조 및 제79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② 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7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1.>

[전문개정 2009. 6. 18.]

[시행일 : 2019.7.1.] 제79조의2

제80조(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①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 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 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삭제 <2018. 7. 11.>

2. 삭제 <2018. 7. 11.>

3. 삭제 <2018. 7. 11.>

②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옆면 페달에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1.>

[전문개정 2012. 2. 15.]

[시행일 : 2019.7.1.] 제80조

제80조의2(후퇴등)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39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8.]

제81조(기타의 등화) ① 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륜자동차의 각종 표시장치에는 야간 운행시 운전자가 계기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도형 또는 지시침등에 발광도료등을 사용하여 조명장치를 대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① 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5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3. 3. 23.>

③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광원은 별표 6의2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8., 2010. 11. 10., 2018. 7. 11.>

④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는 별표 6의2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1.>

[시행일 : 2019.7.1.] 제82조

제83조(경음기) 제53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경음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간접시계장치)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7 시계범위에 적합한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 9.]

제85조(속도계) ① 이륜자동차에는 속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제110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0 \leq V_1 - V_2 \leq V_2 / 10 + 8 \text{ (킬로미터/시간)}$$

V_1 :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_2 :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4항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최고속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8.]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개정 1997. 1. 17.)

제85조의2(적용범위) 이 장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7. 1. 17.]

제86조 삭제 (2003. 2. 25.)

제87조(가속제어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가속제어장치는 자동차를 쉘시 영상 18도부터 쉘시 영상 52도까지의 주변온도에서 12시간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하거나 1개의 복귀동력원을 절단하여 작용력을 제거할 경우: 운전자가 작용력을 제거한 시점부터 1초 이내에 가속위치에서 공회전 상태로 복귀할 것
2.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가속제어장치로서 제어계통의 어느 한 부분이 절단되거나 단락될 경우: 운전자가 작용력을 제거한 시점 또는 절단이나 단락 발생 시점으로부터 1초 이내에 가속위치에서 공회전 상태로 복귀할 것

[전문개정 2014. 6. 10.]

제88조(계기판넬)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화물자동차 및 경형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머리충격부위안의 계기판넬중 다음 각호의 부분을 제외한 계기판넬은 지름 165밀리미터, 무게 6.8킬로그램의 머리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승객측 계기판넬에 에어백을 장착한 경우에는 매시 19.2킬로미터)의 속도로 계기판넬에 충돌시킬 경우 머리모형이 받는 감속도가 1천분의 3초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8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격실문이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부격실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1995. 7. 21., 1995. 12. 30., 2018. 7. 11.>

1. 라디오·변속레버·제털이등을 설치한 콘솔부분
2. 차체옆면에서 차실안쪽으로 127밀리미터지점까지의 부분
3. 머리모형이 앞면창유리와 계기판넬에 동시에 접할 경우 계기판넬의 접점부분에서 앞면창유리까지의 부분
4. 머리모형이 조향핸들의 승객측 가장자리에 접하는 수직중단면과 계기판넬에 동시에 접할 경우 계기판넬의 접점부분에서 운전자측 차체옆면까지의 부분
5. 계기판넬 가장뒤끝의 아래부분

제88조의2(타이어)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가 시속 97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선 주행하는 상태에서 그 자동차의 타이어를 파열시켜 급속하게 공기를 빠지게 하고, 동시에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바퀴의 잠김없이 일정한 감속도로 정지시킬 경우 정지할 때까지 파열된 타이어가 타이어립에서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본조신설 2003. 2. 25.]

제88조의3(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성능·경고표시 및 표기기준 등은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16.]

제89조(조향장치) ①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조향장치의 충격흡수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별표 14 및 별표 14의7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본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초소형자동차의 경우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1995. 7. 21., 2003. 2. 25., 2018. 7. 11., 2018. 12. 31.>

1. 조향핸들에 몸체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의 속도로 충돌시킬 경우 몸체모형에 의하여 조향장치에 전달되는 충격하중이 1천분의 3초 이상 연속적으로 1천13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다만, 조향축의 수평면에 대한 설치각도가 35도를 초과하는 조향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전방조종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경우 조향기동과 조향핸들축 외곽의 후방변위량이 자동차길이 방향으로 127밀리미터 이하일 것

②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대한 구조 및 성능, 고장 시 기준 및 경고장치 기준 등은 별표 6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0.>

[시행일 : 2020. 9. 1.] 제89조

제89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별표 6의29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9.]

[시행일] 제89조의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공포한 날

나. 가 목 외의 적용차종: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90조(제동장치) 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 4. 14., 2018. 7. 11.>

1.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1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화물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1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3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4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5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연결자동차의 선회시 제동능력은 별표 7의6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폴트레일러 형식의 연결자동차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3. 2. 25.]

제90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능고장 식별표시 기준 등은 별표 7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본조신설 2010. 11. 10.]

제90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는 별표 7의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9.]

[시행일] 제90조의3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공포한 날

나. 가 목 외의 적용차종: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91조(연료장치) ①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 10의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8. 25., 2001. 4. 28.>

1. 삭제 <2001. 4. 28.>

2. 삭제 <2001. 4. 28.>

②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1. 4. 28.>

③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2의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 25.>

④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4.5톤 이하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는 별표 11의3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5의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10.>

⑥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내압용기 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하중을 가할 때 파손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4. 6. 10.>

1.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가.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10.0배

나. 자동차 수평횡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2.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가.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6.6배

나. 자동차 수평횡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⑦ 천연가스 또는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마을버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및 2층 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1의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1.>

[전문개정 1995. 7. 21.]

[시행일 : 2020. 7. 1.] 제91조

제92조(천정구조) 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천정은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75센티미터 및 18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120초 이내의 시간에 매초 12.7밀리미터 이하의 속도로 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5배 또는 2천270킬로그램중 작은 값에 도달할 때까지 하중을 가할때에 천정의 변위량이 127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1995. 7. 21., 2018. 12. 31.〉

제93조(범퍼)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11의4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범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전문개정 2011. 10. 6.]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①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별표 12의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와 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후방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별표 1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 14., 2018. 7. 11.〉

② 자동차의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한다]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2. 19.〉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7. 11. 14.〉

[전문개정 1995. 7. 21.]

[제목개정 2017. 11. 14.]

제95조(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자동차의 차실안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호의 내장재는 매분당 102밀리미터 이상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5.〉

1. 좌석·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2. 팔걸이·머리지지대 및 햇빛가리개
3. 차실천정·차실바닥 및 깔판
4. 내부판넬

제96조(후부안전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부안전판은 별표 13의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 4. 28.]

제97조(운전자 및 승객좌석의 설치) ① 자동차의 좌석(옆면을 향한 좌석, 접이식보조좌석 및 승합자동차의 승객용 좌석을 제외한다)은 조절이 가능한 어느 위치에 있을 경우에도 제1호 또는 제2호의 힘을 가할 때와 좌석을 가장 뒤쪽에 위치시키고 제3호의 힘을 가할 때에 이에 견디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힘을 가하기 이전의 위치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1. 안전띠가 좌석에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좌석무게의 20배에 해당하는 앞과 뒤로 가하여지는 자동차길이방향의 힘
2. 안전띠가 좌석에 부착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힘과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띠에 가하여지는 힘을 합산한 힘
3. 전방을 향한 좌석의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 대한 38킬로그램·미터의 후방모멘트, 후방을 향한 좌석의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 대한 38킬로그램·미터의 전방모멘트

② 경첩식좌석과 접이식좌석(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좌석과 승합자동차의 승객용 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좌석과 좌석등받이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와 잠금상태를 풀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금장치는 다음 각호의 힘을 잠금장치에 가할 때에 풀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앞쪽을 향한 좌석에 있어서는 좌석이 젖혀지거나 접히는 부분의 중량의 20배에 상당하는 앞으로 가하여지는 자동차길이방향의 힘
2. 뒷쪽을 향한 좌석에 있어서는 좌석이 젖혀지거나 접히는 부분의 중량의 8배에 상당하는

뒤로 가하여지는 자동차길이방향의 힘

3. 좌석이 젖혀지거나 접히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가하여지는 중력가속도의 20배에 상당하는 자동차길이방향의 관성하중

제98조(좌석등받이) 승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머리충격부위안의 좌석 등받이는 지름 165밀리미터, 무게 6.8킬로그램의 머리모형을 때시 24.2킬로미터의 속도로 좌석등받이(머리지지대가 설치된 좌석의 경우에는 머리지지대)에 충돌시킬 때에 머리모형이 받는 감속도가 1천분의 3초 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8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 격실문이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부 격실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좌석등받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3. 3. 23., 2018. 7. 11., 2019. 3. 21.>

1. 가장뒷열에 있는 좌석등받이
2. 측면을 향한 좌석등받이
3. 서로 마주붙은 좌석등받이
4. 접이식보조좌석의 좌석등받이
5.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좌석등받이
6. 초소형자동차에 설치된 좌석등받이

[시행일 : 2020. 1. 1.] 제98조

제99조(머리지지대)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 및 그 밖의 좌석(머리지지대를 설치한 좌석만 해당한다)의 머리지지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접이식 보조좌석, 옆보기 좌석 및 뒤보기 좌석의 머리지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29.]

제100조(팔걸이)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하는 팔걸이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에 설치된 팔걸이와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는 접이식팔걸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7. 11.>

1.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고 옆방향으로 하중을 가할 때에 하중을 가하는 물체와 팔걸이 내부의 단단한 부분이 접촉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50밀리미터이상 옆방향으로 비틀리거나 찌그러지는 구조일 것
2. 골반충격부위안에서 수직방향으로 높이가 50밀리미터이상인 부분이 연속하여 50밀리미터 이상일 것

제101조(햇빛가리개)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햇빛가리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 7. 11.>

1.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거나 감싸여져 있을 것
2. 지름 165밀리미터의 머리모형과 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머리충격부위안의 단단한 재질로 된 모서리의 반경은 3.2밀리미터이상일 것

제102조(충돌 시의 승객보호) ① 승용자동차는 별표 14의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차량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4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 및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 12. 31.>

②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4의3의 충돌시 차체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경우는 별표 14의4의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의 시험조건 중 하나로 시험하였을 경우 차체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5., 2014. 6. 10., 2017. 1. 9., 2018. 12. 31.>

③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의 바깥면에 별표 14의5의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 4. 28.]

[제목개정 2018. 12. 31.]

[시행일 : 2020. 9. 1.] 제102조

제102조의2(보행자 보호)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와 자동차의 앞바퀴 중심축에서 운전자 좌석의 착석기준점까지의 거리가 1천1백밀리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0. 6., 2018. 7. 11.>

1. 보행자머리모형을 자동차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아래방향(성인머리모형의 경우 65도, 어린이머리모형의 경우 50도의 각도를 말한다)으로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머리모형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머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2. 보행자다리모형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 가.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 나.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이상 5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 또는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 다.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5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본조신설 2008. 12. 8.]

[시행일 : 2018. 1. 1.]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제102조의3(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시행일 : 2020. 9. 1.] 제102조의3

제102조의4(기동측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14의8의 기동측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 및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8. 12. 31.]

[시행일 : 2020. 9. 1.] 제102조의4

제103조(좌석안전띠장치 등) ① 자동차에 설치하는 안전띠는 별표 15의 좌석안전띠의 조절기준 및 별표 16의 좌석안전띠의 정적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② 삭제 <2014. 6. 10.>

③자동차의 안전띠부착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1995. 12. 30., 1997. 8. 25., 2005. 8. 10.>

1. 2점식 또는 어깨부분과 골반부분이 분리되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2천270킬로그램의 하중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820킬로그

램, 승합자동차의 제1열좌석(운전자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2.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 및 골반부분에 동시에 1천360킬로그램의 하중을 가할 때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100킬로그램, 승합자동차의 제1열좌석(운전자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69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3. 2점식 또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착석기준점과 골반부분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동시에 지나고 차량중심면(차량중심면을 포함하며 지면에 수직인 평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직인 평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30도이상 75도이하이어야 하고, 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지나고 차량중심면에 평행한 두 평면사이의 거리가 165밀리미터이상일 것
4.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부착장치는 별표 17에 표시된 범위안에 설치할 것

④ 삭제 <2008. 1. 14.>

제103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제27조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상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의 하중을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하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 및 자동차길이방향의 75도 방향으로 510킬로그램의 하중을 각각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 14.]

제104조(승강구) ①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옆문은 지름 305밀리미터의 강철제 원형 또는 반원형기둥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매초 12.7밀리미터이하의 속도로 하중을 가할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1995. 7. 21., 2001. 4. 28., 2018. 7. 11.>

1. 승강구의 옆좌석을 떼어내고 시험할 경우
 - 가. 155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0.83배 또는 1천2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 나. 310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3배 또는 1천58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 다. 460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최대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2배 또는 3천16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2. 승강구의 옆좌석을 떼어내지 아니하고 시험할 경우
 - 가. 155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0.83배 또는 1천2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 나. 310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63배 또는 1천98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 다. 460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최대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3.5배 또는 5천645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②초소형자동차,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옆문 승강구와 탑승자의 승하차가 가능하거나 수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뒷문 승강구(이하 "뒷문"이라 한다)의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휠체어승

강기가 설치된 승강구, 접이식승강구, 말려올라가는 구조의 승강구, 탈착식 승강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7. 21., 1995. 12. 30., 2006. 4. 14., 2018. 7. 11.>

1. 여단이식 승강구의 경우

가.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와 중간닫힘위치로 구분되는 구조일 것

나.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905킬로그램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고, 뒷문은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에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905킬로그램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문걸쇠장치에 수직인 방향으로 910킬로그램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730킬로그램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고, 뒷문은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에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730킬로그램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 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고, 뒷문은 자동차수직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도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문걸쇠장치는 중간닫힘위치에서 45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일 것.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36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어야 한다.

마. 문경첩장치는 1천13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905킬로그램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고, 뒷문은 905킬로그램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일 것.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91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730킬로그램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고, 뒷문은 730킬로그램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미단이식 승강구(경형자동차의 승강구를 제외한다)의 경우

가.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와 중간닫힘위치로 구분되는 구조일 것

나.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905킬로그램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일 것

다.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 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문걸쇠장치는 중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문걸쇠장치면에 나란 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각각 450킬로그램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일 것

마. 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의 양쪽 끝에 있는 승강구의 지지부분에 자동차너비방향으로 각각 905킬로그램의 하중을 동시에 가할 때 승강구의 지지부분과 문 사이의 간격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각각의 하중부과장치의 너비방향 최종변위가 300밀리미터 이하일 것

③ 초소형자동차의 옆문 승강구와 뒷문의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1.>

1.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를 갖출 것

2.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910킬로그램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730킬로그램의 하중을 각각 견딜 것. 이 경우 뒷문의 문걸쇠장치는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문이 열리는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730킬로그램의 하중에도 견딜 것

3.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증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것. 이 경우 뒷문의 문걸쇠장치는 자동차수직방향으로 증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도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것
4. 문경첩장치는 91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730킬로그램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견딜 것. 이 경우 뒷문의 문경첩장치는 730킬로그램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딜 것
5. 문이 완전닫힘위치에서 문의 중심 또는 착석기준점과 같은 높이 지점이거나 수직으로 500밀리미터 이하의 지점에 2킬로뉴턴의 자동차너비방향 하중에도 견딜 것. 이 경우 자동차 바깥쪽 변형은 허용된다.

제105조(창유리의 안전성 등) ① 제34조제1항의 창유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적 강성 등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0. 3. 29., 2013. 3. 23.>

②승용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자동차를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9.>

1. 에어백 또는 자동안전띠등과 같은 승객자동보호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는 창유리가 붙어 있는 창유리지지틀의 길이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창유리지지틀 둘레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2. 승객자동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창유리가 붙어 있는 창유리지지틀의 길이가 전체 창유리지지틀 둘레의 75퍼센트 이상일 것
3. 창유리지지틀 및 창유리와 접하여 설치된 장치를 제외한 차실밖에 있는 부품이 별표 18의 앞면창유리보호구역에 설치된 보호형판의 내부로 6.3밀리미터를 초과하여 들어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보호구역 아래의 창유리부분을 관통하여 차실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③다음 각호의 자동차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7. 21., 1995. 12. 30., 2010. 3. 29.>

1. 앞면창유리를 뺄 수 있거나 접을 수 있도록 제작된 무개자동차
2. 전방조종자동차
3. 경형자동차

[제목개정 2010. 3. 29.]

제106조 삭제 <2014. 6. 10.>

제107조 삭제 <2014. 6. 10.>

제108조 삭제 <2017. 1. 9.>

제109조(창답이기장치등) ①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와 경형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답이기·서리제거장치·안개제거장치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4., 2018. 7. 11.>

1. 창답이기는 제51조제2항 및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8퍼센트 이상을, 동 "나"부분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각각 세척할 수 있을 것
 - 나.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2분이상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 다. 최고속도의 80퍼센트 또는 매시 120킬로미터의 속도에 해당하는 상대공기속도를 가하였을 때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8퍼센트 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2. 서리제거장치는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10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작동시켰을 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작동후 20분 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 나. 작동후 25분 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과 자동차길이방향으로 대칭되는 앞면창유리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 다. 작동후 40분 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나"부분 면적의 95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 3. 안개제거장치는 썬씨 영하 3도의 주변온도에서 10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작동시켰을 때 10분 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0퍼센트이상, 동 "나"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안개를 제거할 수 있을 것
- 4.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창담이기를 최고속도로 10회 작동시키는 동안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의 60퍼센트이상의 면적을 세척하는데 필요한 양의 세정액을 분사할 수 있을 것
 - 나. 썬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 다. 썬씨 영상 60도의 주변온도에서 8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 ② 초소형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담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1.>
 - 1. 별표 30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 2.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창담이기를 최고속도 10회 작동시키는 동안 별표 30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세척하는데 필요한 양의 세정액을 분사할 수 있을 것
 - 나. 썬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후에도 정상작동할 것
 - 다. 썬씨 영상 60도의 주변온도에서 8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후에도 정상작동할 것

[전문개정 1997. 1. 17.]

제110조(속도계) ①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8.>

- 1. 속도표시부는 운전자의 직접시계의 범위내에 위치하고, 주·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을 것
- 2. 속도표시범위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 3. 눈금은 시속 1킬로미터·2킬로미터·5킬로미터 또는 10킬로미터 단위로 구분되고, 다음 각목의 값들이 숫자로 표시될 것. 다만, 속도표시값의 간격은 균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가.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 나.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②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0 \leq V_1 - V_2 \leq V_2 / 10 + 6 \text{ (킬로미터/시간)}$$

V_1 :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_2 :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전문개정 2003. 2. 25.]

제110조의2(최고속도제한장치)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별표 30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2. 25.]

제111조(원동기 출력) 자동차의 원동기(내연기관, 구동전동기, 연료전지를 포함한다) 출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자동차(소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내연기관 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 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가. 최고출력의 경우: ± 2 퍼센트
 - 나. 그 밖의 부분출력의 경우: ± 4 퍼센트
 - 다. 회전수의 경우: ± 1.5 퍼센트
2. 자동차의 구동전동기 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가. 최고출력의 경우: ± 5 퍼센트
 - 나. 그 밖의 부분출력(최고 30분 출력은 제외한다)의 경우: ± 5 퍼센트
 - 다. 회전수의 경우: ± 2 퍼센트
 - 라. 최고 30분 출력의 경우: ± 5 퍼센트
3. 자동차용 연료전지의 최고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소소형자동차의 내연기관은 제63조의2에 따른 원동기 출력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0.]

[제목개정 2018. 7. 11.]

제111조의2(전자파 적합성) 자동차는 별표 30의3의 전자파 적합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23.]

제111조의3(내부격실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아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화물자동차 및 경형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의 계기판넬·좌석등받이 및 설계착석위치와 인접한 측면판넬 등에 설치된 내부격실문은 내부격실문의 잠금장치를 잠그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 7. 11.>

1. 내부격실문의 걸쇠장치에 자동차의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1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 열리지 아니할 것
2. 매시 48.3킬로미터(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 충돌시킬 때 열리지 아니할 것
3. 내부격실문의 걸쇠장치에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 열리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1997. 1. 17.]

제111조의4(연료소비율) ①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1.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5 퍼센트 이내
2. 고속도로주행 연료소비율: -5 퍼센트 이내
3.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5 퍼센트 이내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연료소비율 시험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6. 4. 14., 2010. 11. 10., 2013. 3. 23., 2014. 12. 31.>

1.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및 고속도로주행 연료소비율: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경형화물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

2.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제1호에 따른 시험대상자동차 외의 자동차

[전문개정 2003. 2. 25.]

제112조(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기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의 기준에 대하여는 제2장 및 이 장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3. 2. 25.]

제3장의2 부품의 안전기준 <신설 2011. 12. 23.>

제112조의2(브레이크호스)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브레이크호스는 별표 30의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기압브레이크호스를 제외한 다른 브레이크호스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일체형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8. 7. 11.>

[본조신설 2011. 12. 23.]

제112조의3(좌석안전띠장치) 자동차에 사용되는 좌석안전띠는 별표 1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3.]

제112조의4(등화장치)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전조등은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5까지의 광도기준 및 별표 6의22의 색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2018. 7. 11.>

[본조신설 2011. 12. 23.]

제112조의5(후부반사기)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후부반사기(보조반사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2018. 7. 11.>

1. 후부반사기의 반사부 모양은 삼각형 모양 외의 것일 것. 다만, 피견인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반사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후부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적색이어야 할 것. 다만, 보조반사기의 경우에는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수 있다.
3.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1. 12. 23.]

제112조의6(후부안전판)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안전판은 별표 1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3.]

제112조의7(창유리)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창유리는 제10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본조신설 2017. 1. 9.]

제112조의8(안전삼각대)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안전삼각대는 별표 30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본조신설 2017. 1. 9.]

제112조의9(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형상·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 6의28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반사부의 반사광은 황색 또는 적색, 형광부의 반사광은 적색일 것

[본조신설 2017. 1. 9.]

제112조의10(브레이크라이닝)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브레이크라이닝은 별표 30의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본조신설 2017. 1. 9.]

제112조의11(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피견인자동차로 한정한다)·화물·특

수자동차에 사용되는 휠은 별표 30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 7. 11.>

[본조신설 2017. 1. 9.]

제112조의12(반사띠)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사띠는 별표 32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9.]

제112조의13(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설치되는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의 형상 및 반사성능기준은 별표 30의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9.]

제4장 보칙

제11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①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1절 및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0. 3. 29.>

②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08. 12. 8., 2010. 3. 29.>

1. 승차정원

가. 이륜·삼륜형: 2명 이하

나. 사륜형: 1명

2. 최대적재량

가. 이륜형: 60킬로그램 이하

나. 삼륜형: 100킬로그램 이하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보도용자동차,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규격화된 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2층대형승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그 밖의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길이·너비·최대안전정사각도 및 최소회전반경등에 관하여 별표 31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5., 2006. 10. 26., 2008. 1. 14., 2008. 3. 14., 2008. 11. 6., 2013. 3. 23.>

②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2조의2,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54조제1항, 제87조 내지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6조 내지 제99조, 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5조, 제108조부터 110조까지, 제110조의2, 제111조,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면청소작업차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2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 8. 25., 2003. 2. 25., 2011. 10. 6., 2011. 12. 23., 2014. 6. 1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안보·치안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작하거나 공항 또는 공장시설·광산·건설공사현장등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용도 및 기능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부칠 수 있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3. 3. 23.>

④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에는 당해자동차의 차체뒷면 오른쪽아랫부분에 외부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도 「도로법」·「도로교통법」 등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7. 21., 2005. 8. 10., 2008. 1. 14.>

⑥ 삭제 <2019. 3. 21.>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의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중 이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국가별 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시된 외국의 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이 규칙의 안전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로 같음할 수 있다. <신설 2003. 2. 25., 2008. 3. 14., 2011. 10. 6., 2013. 3. 23.>
- ⑧ 도로의 보수·제설 등 공공목적에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에 부착하는 충격완화장치 또는 모래살포장치 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 4. 14.>
- ⑨ 모듈트레이러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및 제9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8.>
- ⑩ 총중량 100톤 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10. 6., 2013. 3. 23.>
- ⑪ 제1항,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길이 및 너비에 대한 기준적용의 특례를 적용받는 자동차(굴절버스, 보도용 자동차, 환경측정용 자동차, 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자동차의 좌우 측면과 뒷면에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 3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사띠를 부착하고, 해당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14., 2008. 12. 8., 2011. 10. 6.>
- ⑫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15조의2·제87조·제88조·제88조의2·제88조의3·제89조제1항·제90조의2·제92조·제93조·제94조제2항·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제102조의2·제103조의2·제104조·제105조·제108조·제110조의2·제111조의3·제111조의4 및 별표 7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8조제3항·제51조·제109조제1호·제2호·제4호 및 별표 7 제4호·제6호·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4의 저속전기자동차의 특례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9., 2010. 11. 10., 2011. 3. 16., 2011. 10. 6., 2011. 12. 23., 2014. 6. 10.>
- ⑬ 안전기준에 관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기준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6. 28., 2011. 10. 6., 2013. 3. 23.>
- ⑭ 수륙양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2. 7. 9., 2013. 3. 23.>
1. 제2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차실(車室)의 유효높이: 168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제102조제2항에 따른 차체강도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계산법에 따른 시험에 적합할 것. 다만, 연간 10대 이하의 수륙양용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⑮ 초소형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7. 4.>
- ⑯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이 지난 자동차의 부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제3장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1. 9.>
- ⑰ 전기도구 구동되는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이 규칙 제59조(대형의 길이 기준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제2항제2호나 목에도 불구하고 길이 3.5미터, 최대적재량 500킬로그램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1. 9.>

제114조의2(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제53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의 구조는 제외한다)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21.]

제115조(제원의 허용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제작자등이 제시한 각종 구조 및 장치의 제원이 이 규칙에 의한 기준과 다른 경우 별표 33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3. 3. 23., 2018. 12. 31.>

제116조(시험방법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시험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0. 3. 29., 2013. 3. 23.>

[제목개정 2010. 3. 29.]

부칙 <제1002호, 1993. 5.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3항제3호, 제99조제1호,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이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자동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3조, 제19조제3항제2호 나목, 제21조, 제22조, 제29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5조제2항제4호, 제58조 및 제1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0조 내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중 "시험대상자동차 1대"를 "시험대상자동차"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부칙 <제1019호, 1994. 1. 8.>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별표 8]의 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22호, 1995. 7.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3항·제19조제3항·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2. 승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91조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대한 제88조·제89조·제97조제1항·제98조·제103조 및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
4. 경승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2호·제92조·제102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
5.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11의 경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의 개정규정

제2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제19조제3항·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7월 1일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2호·제19조제3항·제20조·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2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차량총중량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는 1996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계속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전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말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1. 신규검사 및 계속검사의 검사항목란의 아. 제동장치의 검사기준란중 (1) 제동력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당해축중의 50%(뒷축의 제동력은 당해축중의 20%)이상일 것

부칙 <제44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54조제2항제2호 가목·제54조제2항제3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의 성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의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0호, 1997. 1. 17.>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제3항제2호 항목·나목·마목·바목 및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49조제2항, 제56조제1항제1호·2호, 제56조제3항, 제90조제5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6항 및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 : 승합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피견인자동차 및 견인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기타의 자동차는 1999년 1월 1일
2. 제49조제2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 : 1997년 7월 1일
3. 제5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 :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경형 및 소형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제2조 (공차상태에 관한 적용례) 공차상태에 관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동일형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동기출력에 관한 적용례) 원동기출력에 관한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파장해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 전자파장해방지장치 및 그 안전시험에 관한 제111조의 2 및 별표 6 제4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 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와 동차종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를 변경한 자동차에 한한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 1997년 7월 1일
2.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1999년 1월 1일
3. 기타의 자동차 : 2000년 1월 1일

제5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교통부령 제1002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월 1일전에 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얻은 차종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그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외의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는 제2조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38조의 2, 제49조제2항, 제54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6조제3항, 제86조, 제87조, 제90조제5항, 제103조제4항, 제107조, 제109조,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1조의3, 제112조,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19, 별표 20, 별표 2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호, 1997. 8.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관한 제2조·제19조·제27조·제29조·제47조·제48조제4항 및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③(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적용례) 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제10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④(자동차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안전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⑤(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신규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17조·제48조제3항·제82조 및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7호, 1998. 8. 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⑤생략

- ⑥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 ⑦내지 ⑧생략

부칙 <제174호, 1999. 2. 1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자동차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형식승인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등록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확인검사·완성검사 또는 신규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말소등록을 한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34조제4항, 제48조제4항제6호 및 제4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호, 1999. 6. 28.>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 2001. 4. 2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 제96조, 제102조제3항, 제111조제2호 및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91조제1항·제2항, 제93조, 제102조제1항·제2항, 제104조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은 당해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5조제6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③(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0호, 2003. 2.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제57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대한 제15조·제89조제2항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
2.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 : 승합자동차는 2005년 7월 1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2006년 7월 1일
3.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
4. 제90조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관련 개정규정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가.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2005년 7월 1일(다만, 승합자동차중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7.5톤 이하 승합자동차는 2006년 7월 1일)

나.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7.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2006년 7월 1일

②(등록자동차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8호, 2004. 8.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안전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제89조제2항·제90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규정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제15조·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안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제89조제2항 및 제90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규정을 제외한다)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5호, 2004. 12. 6.>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465호, 2005. 8.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 별표 19의2 주란의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3조제3항제1호 본문·단서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격벽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단서, 제27조제1항,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03조제3항제1호 본문·단서 및 제2호 단서,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9호, 2006. 4. 1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및 별표 14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7조 단서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9호, 2006. 5. 3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 ⑪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 ⑫내지 ⑯생략

부칙 <제537호, 2006. 10. 26.>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간)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③(승합자동차 차실높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 후단, 제31조제2항, 제57조제2호 다목 단서, 제114조제1항, 별표 23(별표 23의2를 포함한다) 및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2호, 2008. 1. 14.>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7항, 제43조제1항제1호, 제50조제3항, 제57조제3호 및 제114조제10항(모듈트레일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2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 중 모듈트레일러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당시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27조의2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모듈트레일러의 반사띠 부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된 모듈트레일러는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사띠 부착 및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사띠 부착 및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 2008. 11.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75호, 2008.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제2항·제3항, 제65조제2항·제3항, 제67조제2항, 제71조제1항,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5조제3항·제4항 및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47조제3항제8호가목, 제48조제4항, 제79조의2, 제106조,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12.31>

1. 승용차: 2013년 1월 1일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 2018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행자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의 보행자보호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7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4호, 2009. 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호, 2009. 2.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36호, 2009.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75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같은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9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차기인증을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79조의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34호, 2010.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6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3점식 안전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2점식 안전띠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머리지지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부착된 머리지지대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제26조, 제9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8>

부칙 <제374호, 2010. 6. 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53조제2호나목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부터 ㉑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7호, 2010. 1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50조, 제90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 별표 7의7 및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2, 제90조의2,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7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8>

제4조(후시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50조 및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 중형 및 대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부착되는 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대해서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전자파적합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9호, 201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제88조의3,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17년 7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8>

부칙 <제360호, 2011.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 2011.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0호, 2011. 10.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의 개정규정(다목적형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0호, 2011.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1항, 제27조제1항제2호·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 중단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면표시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이륜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제69조·제7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2012년 6월 16일까지는 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42호, 2012. 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2항, 제15조제5항 및 제12항,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 제106조,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5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 나. 차량총중량이 4.5톤 초과 10톤 미만인 승합자동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다. 차량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 공포한 날
3. 제5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차량총중량이 3.5톤 초과 16톤 미만인 화물·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나. 차량총중량이 16톤 이상인 화물·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공포한 날
4. 제63조의2의 개정규정: 2014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저속전기자동차, 경형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0년 8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8.8>

제4조(제동력지원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0년 8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8.8>

제5조(이륜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구동전동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제76조·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륜자동차의 전조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광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96호, 2012.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4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5호, 2012.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제18조의3제3호, 제23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후단, 제82조제2항, 제98조제5호, 제99조 본문, 제105조제1항, 제1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4조제1항·제3항·제6항·제7항·제10항, 같은 조 제13항 후단,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115조, 제116조, 별표 5의4 제3호나목, 별표 5의15 비고, 별표 14의4 주 제2호, 별표 19의2 주 제10호, 별표 31 최소회전반경의 대상차종란 나목 및 같은 표 완충장치의 대상차종란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6호, 2014.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압고무타이어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호, 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 및 별표 5의2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0항 및 별표 5의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후사경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고기록장치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의2 및 별표5의2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호, 2014. 6.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9항제2호, 제15조제13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5조제5항, 제27조, 제30조, 제38조의4, 제67조제1항, 제75조의2, 제87조, 제91조제4항·제5항·제6항, 제103조, 제114조제12항 및 별표 7의2: 2015년 7월 1일
2.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79조의2, 제106조, 제107조, 제112조의4 및 제112조의5: 2016년 1월 1일
4. 제15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2016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회생제동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제2호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측면보호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상차종 중 피견인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및 등화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49조, 제75조의2, 제79조의2, 제87조, 제106조, 제107조, 제112조의4 및 제11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좌석안전띠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조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호, 2014.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료소비율 시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호, 2015. 1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는 별표 5의26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5호, 2016. 7. 4.> (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86호, 2017.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11.14>

1. 제12조제4항, 제15조제11항, 제49조제7항, 제57조제2항, 제64조, 제112조의7부터 제112조의13까지, 별표 1(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30의5부터 별표 30의8까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13조제4항, 제22조, 별표 1의2, 별표 2: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3. 별표 30의3: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4. 제2조제60호·제61호, 제14조의2, 제15조의3, 제89조의2, 제90조의3, 별표 6의29, 별표 7의8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공포한 날
나. 가 목 외의 적용차종: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5. 제2조제62호·제63호, 제23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별표 5의27부터 별표 5의31까지: 2019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제13조제4항, 제14조의2, 제15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50조제1항제1호, 제57조제2항, 제89조의2, 제90조의3, 별표 2, 별표 5의6(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5의7(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5의27부터 별표 5의30까지, 별표 6의29, 별표 7의8 및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11.14>

제3조(조종장치 및 도난방지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50조제1항제1호, 제57조제2항, 별표 2, 별표 5의6(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5의7(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5의27부터 별표 5의30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11.14>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5조의3, 제89조의2, 제90조의3, 별표 6의29 및 별표 7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 2018년 1월 1일
2.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2019년 1월 1일

제5조(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2(비상탈출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승합 자동차는 별표 5의3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1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개수: 1개 이상
2. 비상탈출구 면적: 0.4제곱미터 이상
3. 비상탈출구 크기: 가로 500밀리미터, 세로 700밀리미터의 직사각형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본조신설 2017.11.14]

제6조(안전삼각대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제40조의5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의 등록을 완료한 안전삼각대 부품제작자등이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안전삼각대의 경우에는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 중단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제112조의7부터 제112조의12까지 및 별표 30의5부터 별표 30의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의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대하여는 별표 5의6 및 별표 5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1.14]

제9조(손조작식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의 손조작식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1.14]

부칙 <제465호, 2017. 1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4의6: 2018년 1월 1일
2. 제2조제63호, 제24조제2항제2호 중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별표 5의28, 별표 5의31: 2019년 7월 1일
3. 제27조, 별표 5의24: 2019년 9월 1일. 다만, 탈착식 뒷좌석과 상하 유동식 좌석이 설치된 열의 좌석은 2022년 9월 1일
4. 제54조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5. 제15조의2 개정규정 중 차량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면서 길이가 11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20톤 이하인 화물·특수자동차: 2023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제24조제2항제2호 중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은 제외한다)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

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 중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전자의 좌석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2호 중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좌석안전띠 경고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별표 5의2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2021년 9월 1일
2. 승합·화물·특수자동차: 2023년 1월 1일

제6조(비상문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31제1호가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4호, 2018.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의2 및 제15조의3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 2019년 1월 1일
 - 나. 가목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2021년 7월 1일
2. 별표 2: 2019년 1월 10일
3. 제53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6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2조,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 별표 5의33부터 별표 5의37까지, 별표 6의21 및 별표 6의22: 2019년 7월 1일
4. 제53조의3, 제91조, 별표 6의33 및 별표 11의6: 2020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별표 2는 제외한다)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조작식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화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의 등화장치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 제38조의3, 제39조의2, 제40조의3,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6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6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2조,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 별표 5의33부터 별표 5의37까지,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18까지, 별표 6의21부터 별표 6의28까지 및 별표 6의30부터 별표 6의32까지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 등화장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자동차 제원표에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초소형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114조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형식의 초소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 제11조제4

항, 제12조제4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 단서, 제15조(제9항제2호 단서 부분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제1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6조, 제27조제4항, 제27조의2, 제32조제1항, 제38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9조, 제40조,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9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50조제1항, 제51조, 제88조 단서, 제88조의2, 제89조제1항 단서, 제90조, 제90조의2, 제93조, 제94조제1항 단서, 제98조, 제100조 단서, 제101조 단서, 제102조제1항, 제102조의2 단서, 제103조의2, 제104조, 제109조, 제111조, 제111조의3 단서, 제112조의2, 제112조의4, 제112조의5, 제112조의7, 제112조의8, 제112조의10, 제112조의11 단서, 별표 33 및 별표 35부터 별표 51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7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 2019년 1월 10일
2. 제49조, 별표 32의2: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
3. 제67조제8호의2: 2020년 1월 1일
4. 제89조, 제91조, 제102조, 제102조의3, 제102조의4, 별표 11의3, 별표 11의5, 별표 14, 별표 14의2, 별표 14의7 및 별표 14의8: 2020년 9월 1일
5. 제13조: 공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에어백고장자동차표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륜자동차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67조제8호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충돌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89조, 제91조, 제102조, 제102조의3, 제102조의4, 별표 11의3, 별표 11의5, 별표 14, 별표 14의2, 별표 14의7 및 별표 14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12호, 2019.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규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50 30 안전속도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매뉴얼

2019년 6월 발행

발행인 : 권 병 윤

발행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 자동차튜닝처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울곡동)

전 화 : 1577-0990

F A X : 0502-384-5497

U R L : <http://www.kotsa.or.kr>

※ 본 교재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비매품)

